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71호 2020. 12. 14.(월)

훈 령

- 목포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2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6

공 고

-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입법예고----- 7
 ○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6
 ○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28
 ○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9
 ○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63
 ○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0
 ○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1

회람

목포시 훈령 제829호

「목포시 공무원인사관리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12월 14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목포시 공무원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교통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 교통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담당, 예산담당, 계약담당, 서무담당, 시정담당, 인사담당”을 “기획팀장, 예산팀장, 계약팀장, 서무팀장, 시정팀장, 인사팀장”으로, “공보담당, 교통지도담당, 청소행정담당, 도로정비담당”을 “공보팀장, 교통지도팀장, 청소행정팀장, 도로정비팀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 1. 1.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 (직위공모제) ① (생략)	제16조 (직위공모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서의 공모직위란 아래의 지정한 직위를 말하며,[별지제2호서 식]에 의하여 근무희망 신청 또는 추천할 수 있다.	②----- ----- ----- -----.
1. 5급은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자치행정과장 등 선호직위와 <u>교통 행정과장</u> , 자원순환과장 등 격무직 위로 한다.	1. ----- ----- <u>안전총괄 과장, 교통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u> ----- -----.
2. 6급은 <u>기획담당, 예산담당, 계약담당, 서무담당, 시정담당, 인사담당</u> 등 선호직위와 <u>공보담당, 교통지도담당, 청소행정담당, 도로정비담당</u> 등 격무직위로 한다.	2. ----- <u>기획팀장, 예산팀장, 계약팀장, 서무팀장, 시정팀장, 인사팀장</u> --- ----- <u>공보팀장, 교통지도 팀장, 청소행정팀장, 도로정비팀장</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실적가점 대상 및 배점표 (제17조제2항 관련)

분 야 별	실 적 가 점 부 여 기 준	배 점	가 점 요 건
1. 새로운 업무발굴 및 업무관련 창안	• 중앙제안 채택 - 금 상 - 은상·동상 - 장려·노력상 ※ 시(자체평가) 및 도 제안 채택시는 중앙제안 배점의 2분의1 부여	1.0점 0.8점 0.6점	• 당해직급 수상에 한함 • 공동제안의 경우 2명 까지 가점부여 • 부제안자(1명)는 주제안자의 2분의1점 부여
2. 예산절감 세수증대 기여자	• 예산절감 및 세수확보액(년간) - 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0.5점 0.3점 0.2점 0.1점	• 인원 : 2명 이내(핵심적인 업무 담당한 담당 및 실무자) • 세원확보 및 예산절감으로 포상금(상사업비)을 받았거나, 중앙부처 감사 등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3. 중앙단위 등 평가 기관표창 수상	• 중앙단위 평가 등 기관표창 수상부서 - 최우수상(1위) - 우수상(2위) - 장려상(3위) ※ 도단위 표창은 중앙단위 배점의 2분의1 부여	0.5점 0.3점 0.2점	• 당해부서 6개월 이상 근무자 • 인원 : 3명 이내(부서장 및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담당·실무자) • 부서장은 년 1회에 한함.
4. 포상가점	• 청백봉사상, 민원봉사대상 •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개인표창 수상 - 훈장, 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장관, 청·처장(차관급), 도지사 표창 - 시장 표창	1.0점 1.0점 0.5점 0.4점 0.2점 0.1점	• 업무와 관련된 포상으로 당해기간에 한하여 가장 높은 점수만 반영 • 포상대장 및 개인별 인사기록 확인(인사부서) ※시장지시사항(2006.12.11)
5. 격무부서 근무자가점	• 격무부서 대상 - 공보과(공보팀장 및 직원) -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및 직원) - 자원순환과(청소행정팀장 및 직원) - 교통행정과(교통지도, 운수사업팀장 및 직원) - 건설과(도로정비팀장 및 직원) -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및 직원) - 안전총괄과(안전관리, 방재팀장 및 직원) - 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팀장 및 직원) • 공공시설물 전기안전관리 선임자 • 평정단위별 기피·격무업무 담당자 - 평정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평정단위별로 2개 업무 이내로 지정 신청할 수 있음	0.3점 ~0.8점 0.2점 0.1점	• 근무경력 1년 이상자 0.3점, 1년6개월 이상자 0.5점, 2년 이상자 0.8점 • 당해기간에 한하여 1회 부여
6. 외국어 능력평가 우수자	• 외국어 경진대회 우수자 - 중앙단위 평가 우수자 - 도 단위 평가 우수자	0.5점 0.3점	• 외국어 경진대회 결과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
7. 다자녀 출산	• 다자녀 출산 공무원 - 2자녀 - 3자녀 이상	0.2점 1.0점	• 2자녀는 2007년 1월 이후 출생자를 적용하고, 3자녀 이상은 2010년 4월 이후 출생자를 적용 •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에 한하며 당해 직급에 한하여 적용
8. 자원봉사활동	• 시민과 함께하는 직원 우대 - 반기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0.1점	•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봉사활동 참여실적 개인별 출력자료 제출분에 한함(근무시간 내 실적 제외)
9. 동근무 사회복지직 사기진작	• 사회복지직으로 동에서 1년이상 근무	0.1점	• 당해기간에 한하여 1회 부여

10.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실적	① 투자자본 300억원 이상 ② 투자자본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③ 투자자본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④ 투자자본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점 1.2점 0.8점 0.5점	• 투자유치 협약 후 공장등록 및 입주 확인 등 착공까지 확인된 건만 인정 - 목포시투자유치위원회에서 인정한 투자유치 건 • 인원 : 핵심적인 역할을 한 2명 이내 • 당해기간에 한하며, 총 체결건수의 투자자본금의 합계로 배점을 인정 하되 그 배점은 1.5점을 초과 부여하지 않음
11. 적극행정우수공무원 가점	• 목포시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선발자 - 최우수상 - 우 수 상 - 장 려 상	0.3점 0.2점 0.1점	• 목포시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선발자에 대해 당해기간에 한하여 부여
12. 타부서사업감독공무원 가점	• 공사분야 타부서 감독수행 - 20억 이상 타부서 공사 감독 수행 - 10억 이상 20억 미만 타부서 공사 감독 수행 - 1억 이상 10억 미만 타부서 공사 감독 수행 - 1억 미만 타부서 공사 감독 수행 • 용역분야 타부서 감독수행	1.0점 0.8점 0.6점 0.4점 0.25점	• 타부서 감독 수행 누적 공사비 기준 으로 당해기간에 한하여 부여

목포시 고시 제 2020-316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북향로 175-4	2020.12.10.	건물멸실
2	북향로 177-2	2020.12.10.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2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목포시 고시 제 2020 - 315호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목 포 시 장

1. 제정이유

- 2020. 10월 목화체험장이 개장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화체험장의 목적, 정의 (안 1조 ~ 2조)
- 관리자 지정, 운영시간 등 (안 2조 ~ 5조)
- 체험료의 징수, 감면, 반환, 세입조치 등 (안 6조 ~ 9조)
- 자원봉사자 모집, 위탁관리, 운영비 지원 (안 10조 ~ 12조)
- 손해배상 (안 13조)
- 본 조례 관련 준용 규정을 규정함 (안 14조)

3. 관련법규 : 해당없음

4. 조례(안) : 별 첨

5. 예고기간 : 2020. 12. 14. ~ 2021. 1. 4. (22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참조 : 공원녹지과장)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목포시 공원녹지과 (목포시 수문로 32)

전화 061)270-3636, FAX 061)270-3584, E-mail jjjong97@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화를 홍보하고 목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화체험장”이란 목화를 홍보하고 체험하기 위한 시설로서 목포시 달동 1332일원에 조성된 목화온실, 목화문화관, 나무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포함 시설물 및 부대시설(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목화체험 프로그램”이란 목화 및 기타 부자재를 이용하여 공예품을 만들거나,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장 내 목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재료비”란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험자”란 목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체험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되,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 ② 체험장에는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경우에는 숲해설가 교육, 공예지도사, 유사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였거나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시간) ① 체험장 운영시간은 10:00~17: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장일)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5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연휴
2. 제 2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체험료 등 징수) ① 체험료 및 재료비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체험자로부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징수한다, 시장은 체험자가 사용료의 납부에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체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체험료는 별표 1의 단체요금을 적용하여 감면하고, 그 관련 행사의 경우 사용료에는 50퍼센트의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보호자 1명에 한정한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8.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후유증환자
 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민주유공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사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15. 그 밖에 시장이 1호부터 14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체험료 반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은 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체험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체험 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전액환불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 전액환불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하지 못하였을 때 : 전액환불

제9조(세입조치) ① 체험장 프로그램 및 기타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 ② 수입금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을 준용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체험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① 목화체험장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 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위탁기간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비의 지원) ① 시장은 체험장 운영에 필요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받은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체험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화체험장 체험료(제6조 제1항 관련)

(1인/1회 기준)

구 분	금 액	비 고
목화체험프로그램	2,000원/인	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부과함

※ 20명이상 단체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

[별지 제1호 서식]

목화체험장 프로그램 사용 신청서

성 명 (단 체)			
소 속		구 분	개인 (), 단체 ()
참가인원	명	성 별	남 (), 여 ()
E-mail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체험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신 청 프로그램			
그 밖 의 사 항			

이와 같이 목화체험장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목포시 고시 제2020 - 317호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관련 감면대상자가 누락되어 실무상 혼선을 줄이고, 보훈 관련 규정을 정비 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2019. 7. 1일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 또한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을 개편, 불합리한 용어 정리를 통해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3조(요금의 감면)에서 요금 감면 대상인 “장애1급~장애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누락된 보훈관계 대상자 추가 규정함

3. 관련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의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4. 신구문 대비표 : 별 첨

5. 예고기간 : 2020. 12. 14. ~ 2021. 1. 4. (22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참조 : 공원녹지과장)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목포시 공원녹지과 (목포시 수문로 32)

전화 061)270-3636, FAX 061)270-3584, E-mail jjjong97@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3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요금의 감면)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6세 미만의 사람 및 65세 이상의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참전 유공자증을 소지한 참전유공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신설>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련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3.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국·공립수목원	100분의 100
7.국·공립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대관전시는 제외한다)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목포시 공고 제2020 - 1863호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1. 목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목포시청 도시계획과(☎061-270-841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12. 14.

목 포 시 장

■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비재정적 집행시설		재정적 집행시설					
						1단계 (2020~2022)		2-1단계 (2023~2024)		2-2단계 (2025년 이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합 계		138	464,842	18	76,494	30	45,115	4	50,164	86	293,069
교통 시설	소계	107	108,075	12	14,361	25	14,303	1	5,770	69	73,641
	도로	85	92,445	4	5,998	25	14,303	-	4,641	56	67,503
	주차장	20	9,319	6	2,052	-	-	1	1,129	13	6,138
	자동차 정류장	2	6,311	2	6,311	-	-	-	-	-	-
공간 시설	소계	19	300,925	5	60,915	3	16,400	2	35,000	9	188,610
	광장	3	14,211	-	-	-	-	-	-	3	14,211
	공원	11	203,868	4	12,771	3	16,400	1	14,000	3	160,697
	녹지	1	151	-	-	-	-	-	-	1	151
	유원지	2	81,656	1	48,144	-	-	1	21,000	-	12,512
	공공공지	2	1,039	-	-	-	-	-	-	2	1,039
유통 및 공급시설	수도공급 설비	2	19,013	-	-	-	-	-	-	2	19,013
공공문화 체육시설	학교	5	27,402	1	1,218	2	14,412	1	9,394	1	2,378
보건위생 시설	공공청사 종합의료 시설	3	1,199	-	-	-	-	-	-	3	1,199
환경기초 시설	하수도	1	8,018	-	-	-	-	-	-	1	8,018
	하수도	1	210	-	-	-	-	-	-	1	210

※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시설은 연차별 계속 계획으로 수립하였음(도로, 공원, 유원지 등).

※ 본 단계별 집행계획 및 사업비는 추정치로 사업시행 시 변경 될 수 있음.

목포시 공고 제 2020-1891 호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4.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관내 아파트 신축 및 공동주택 동 명칭변경으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정 대상 지역 및 조정 사유

대상 지역	조 정 사 유
용당1동	- 세대수 및 면적 과밀·과소 통반 조정
산정동	- 아파트 신축
연산동	- 아파트 신축
신흥동	- 세대수 및 면적 과밀·과소 통반 조정

○ 조정 현황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조정사유
	통	반	통	반	통	반	
시전체	617	2,662	619	2,667	증2	증15	
용당1동	46	195	46	198	-	증3	- 세대수 및 면적 과밀·과소 통반 조정
산정동	27	108	28	112	증1	증4	- 공동주택 신축 (산정대광로제비양 416세대)
연산동	19	89	20	94	증1	증5	- 공동주택 신축 (골드클래스9차 356세대)
신흥동	36	165	36	168	-	증3	- 세대수 및 면적 과밀·과소 통반 조정

3. 규칙 개정안 : 별첨

4.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제2조(하부조직)
-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5. 예산사항 : 14,040천원

- 통장수당 : 2명×4,680,000원=9,360,000원 ※ 1년 기준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7. 규제심사(심의)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2. 14(월) ~ 2021. 1. 4. (월)(21일간)

9.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

10.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월 4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9),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용당1동 통·반명과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용당1동	23	1	산정로186번길 6,8,8-1,10,10-1,10-2,10-3,10-4,12,12-1,12-2,14, 14-1, 14-2,16,16-1 영산로245번길 26,26-1 영산로257번길 25-1,25-2
		2	동부로21번길 14,16,16-1,16-2,16-3,16-4,18,18-1,20,20-1,20-2,20-3,22, 22-1,22-2,24 영산로245번길 24,24-1 영산로257번길 23,25
		3	영산로245번길 18,20,20-1,22, 동부로17번길 20-2(동부연립)
		4	동부로17번길 14,14-1,16,18,20-1, 동부로21번길 13,15,15-1,15-2,17, 17-1,17-2,17-3,17-4 영산로257번길 19,19-1,21
		5	산정로 178, 178-1, 180, 180-1, 180-2,180-3,182, 182-1, 184, 184-1 산정로186번길 2, 2-1, 4 영산로245번길 23, 23-1, 23-2, 25, 25-1
용당1동	33	1	영산로183번길 2,2-1, 2-2 ,2-3, 2-4,3,4,5,5-2,7,9,9-1, 호정로 38-3, 영산로 179,179-1,181,183,185, 185-1, 산정동 50-11,12,13,79~97,44,58, 145,157,203,209,210,211,212,116
		2	영산로 185-2,187 호정로 38,38-1,38-5,38-6,38-7,38-8,38-9,38-10,38-11,38-12, 40,42, 42-1,42-2 산정동 50-9,14~24,27,28,29,30,116,129,130,131,134,135, 140,181, 183,187,188,191,192,220,221,51-1,3
		3	연산로 5,5-1,5-2,7, 산대로 43,45 산대로45번길 1,3 산정동 50-66~78,122, 54-1,5,6,8,9,10,11,12
		4	연산로 1-1,3,3-1,3-2 산대로45번길 3-1 산정동 52-3,4, 54-4,14,55-21
		5	호정로 41,41-5,41-4,36,36-1 산대로 45-1,47,49,51 산대로45번길 2,3-3,4-2,4-4,7 호정로37번길 6, 산정동 55-5,10,12,13,14,19,20,21,24,30,31,32,35,36~38, 39,40,41, 42,43,45,46,47,74

	34	1	노송길 32-6, 노송길38번길 10, 10-1, 12, 16, 8-10 산대로45번길 10, 11, 11-1, 11-2, 12, 12-1, 호정로37번길 5, 5-1, 7 호정로 33, 33-2, 33-3, 33-4, 36, 36-1, 37 산정동 50-43-45, 50, 74-81, 85, 86, 74-103, 114, , 121, 125, 126, 128, 129, 132
		2	노송길38번길 8, 8-1, 8-2, 8-3, 8-4, 8-5, 8-6, 8-7, 8-8, 8-9, 8-10, 11-7, 7-1, 11-1 호정로31번길 8, 8-1, 10, 10-1, 11, 12, 12-1, 14, 14-1 노송길 32-6, 34 산정동 74-94, 153, 161, 183,
		3	노송길38번길 11,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1-10, 11-11, 13, 산대로 53, 53-1, 55-1, 55-2, 55-3 호정로37번길 13, 15 산정동 60-, 2, 4, 62-4, 6, 7
		4	노송길38번길 2, 3, 4, 5, 5-2, 5-3, 5-4 산대로 55-4, 55-5, 57, 57-1, 57-2, 57-3, 57-4, 59, 61, 61-2
		5	노송길 38, 38-1, 38-2, 40, 42, 42-1, 42-2, 42-3, 46 산대로 46, 63, 65, 65-1, 65-2 67 연산로17번길 3-1
용당1동	39	1	산정언덕로5번길 13 연산로 52-1, 52-2, 52-3 산정언덕로5번길 9, 11, 11-1, 11-2, 11-3, 연산로 48-1, 48-2, 52-1, 52-2, 52-3, 54, 54-1
		2	산정로 208-1, 연산로 38,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40, 산정언덕로5번길 3, 3-1 산정동 131-1, 133, 133-2, 6, 136-1, 3, 143-17
		3	연산로 54-7, 58, 58-1 산정로199번길 25 산정동 224-20, 226-61, 117, 118, 122
		4	산정로199번길 25, 산정언덕로11번길 7, 7-1, 7-2, 7-3, 산정언덕로5번길 12-1, 12-2, 12-3, 14, 14-1, 14-2, 14-3,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9 산정언덕로5번길 16-10, 산정동 23-95, 96, 139~141, 143-74, 83,
		5	산정언덕로11번길 6, 6-1, 6-2 , 산정언덕로5번길 4-1, 4-2, 4-3, 4-4, 4-5, 6-1, 8, 10, 16-10, 산정언덕로 5-1, 7, 7-1, 7-2, 9, 9-1, 9-2, 13,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5-1 , 17, 17-1, 17-2, 17-3, 17-4, 산정로 171, 산정동 23-3, 8, 22, 61, 70~72, 86, 97, 99, 103, 148, 143-46, 47, 50, 55, 59, 69, 12-26, 27, 225-2, 60, 226-8, 22~26, 34, 37, 54~56, 59, 71, 75,

40	1	영산로 207, 207-1, 209, 209-1, 211-1, 213-3, 215-1, 217-2, 219, 219-1, 221, 221-1, 223, 223-1, 223-2 산대로 13-3, 15, 23, 23-1, 23-2, 25, 27, 27-2, 27-3 산정동 38-6,
	2	산대로 4-7, 4-8, 4-9, 4-10, 4-11, 4-12, 4-13 산대로 6, 6-1, 6-2, 7, 7-1, 8, 8-1, 8-2, 8-3, 9, 10, 11, 11-1, 영산로 223-3, 225, 225-1227, 229, 229-1, 229-2, 230, 산정동 1044-1
	3	산정언덕로32번길 5, 5-1, 5-2 산정언덕로36번길 3, 3-1, 4, 6, 10, 10-1 산대로 16-5 산정동 18-37, 39, 43, 45, 20-1, 4
	4	산대로 10-2, 10-3, 10-4, 10-5, 12, 12-1, 12-2, 14, 14-1, 16-1, 16-3 산정동 20-9, 15, 18, 19,
	5	산정언덕로14번길 14-1 산정언덕로32번길 6-4, 8, 10, 12, 12-1, 12-2 산정동 13-15, 16, 37, 65~68, 84, 90, 91, 17-1, 3~9, 11, 12,
42	1	연산로30번길 3, 5, 5-1, 7, 9 연산로 34, 산정언덕로10번길 3-2, 4, 5, 5-1, 5-2, 6, 6-1, 6-2, 6-3, 7, 8, 8-1, 8-2 산정언덕로 6, 6-1,
	2	연산로30번길 9-1, 9-2, 9-3, 9-4, 9-5, 11, 11-1, 11-2, 13, 13-1, 13-2, 13-3, 13-4, 14, 14-1, 15, 16 연산로30, 산정동22, 23-110,
	3	산정언덕로14번길 4, 4-1, 4-2, 연산로30번길 21, 산정언덕로10번길 1, 2-1, 3-1, 산정언덕로 8, 10, 10-1, 10-2, 10-3, 10-4, 12, 12-1, 12-2, 14, 14-1, 산정동 143-63
	4	산정언덕로 18-1, 18-2, 18-3, 18-4, 18-5, 18-6, 20, 24, 26-1 산정언덕로14번길 1, 1-1, 3, 3-1, 3-3, 5, 5-1, 7, 9-1, 9-2, 9-3, 9-4 산정동 12-4, 13-, 99 226-46
	5	산정언덕로 20, 24, 28, 30, 30-1, 30-2, 산정언덕로14번길9, 10, 10-1, 10-2, 13, 15, 15-1 연산로30번길 16-1, 16-2, 산정동 13-6, 8,

별표 산정동 통·반명과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산정동	28	1	양을로79번길 6, 101, 102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2	양을로79번길 6, 103, 104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3	양을로79번길 6, 105, 106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4	양을로79번길 6, 107, 108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별표 연산동 통·반명과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연산동	20	1	연산백련로1번길 111 (골드클래스9차아파트, 901동, 상가동)
		2	연산백련로1번길 111 (골드클래스9차아파트, 902동)
		3	연산백련로1번길 111 (골드클래스9차아파트, 903동)
		4	연산백련로1번길 111 (골드클래스9차아파트, 904동)
		5	연산백련로1번길 111 (골드클래스9차아파트, 905동)

별표 신흥동 통·반명과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2	1	하당로 77, 66, 62, 56, 56-1, 58-1, 60, 58, 58-2, 46, 48, 50, 52, 50-1, 52-1 하당로 68번길 8, 10, 10-1 하당로 60번길 3, 7, 4, 8, 6, 하당로 44번길 3-5, 3-3, 3-1, 3, 3-4, 3-2
		2	하당로68번길 14, 16, 18, 20, 20-1, 12, 24 하당로60번길 15, 13-1, 13, 11, 9, 11-1, 10, 10-1, 10-2, 18 하당로30번길 29, 27, 23, 25, 26, 28, 28-1, 30 하당로34번길 22, 20 하당로44번길 5-4, 5-3, 5-2, 5-1, 5, 13 교육로 21-1 교육로 41번길 7, 9, 11
		3	하당로 30번길 17, 15-1, 13, 19, 15, 5-1, 3, 11, 9, 7, 5, 1 하당로 34번길 10, 14, 16, 12, 13, 11, 9-1, 9, 7, 5-2, 5-1, 3, 2, 4, 4-1, 6, 8, 5-3, 5 하당로 44번길 8, 14, 10, 6, 6-1, 4, 4-1, 4-2 하당로 36, 36-1, 38-1, 38, 40
		4	교육로 5, 17, 15, 11, 13-1, 13, 23, 21, 19 교육로 41번길 5, 3 하당로 30번길 8, 10, 10-1, 12, 14, 14-1, 16, 18-1, 18-2, 18 하당로 44번길 18
	3	1	신흥로 13, 101동 101~1302호(상동, 우성아파트) 신흥로 15 (상동, 우성아파트 상가)
		2	신흥로 13, 101동 103~1305호(상동, 우성아파트)
		3	신흥로 13, 102동 101~1502호(상동, 우성아파트)
		4	신흥로 13, 102동 103~1505호(상동, 우성아파트)
		5	신흥로 13, 102동 106~1507호(상동, 우성아파트)
		6	교육로 45, 45-1 교육로 41번길 21, 25, 21-1 임암로 42번길 17, 17-1, 19, 19-1, 21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4	1	신흥로 13, 112동 101~1505호(상동, 우성아파트)
		2	신흥로 13, 113동 101~1205호(상동, 우성아파트)
		3	신흥로 13, 114동 101~1505호(상동, 우성아파트)
		4	신흥로 13, 114동 106~1507호(상동, 우성아파트)
		5	교육로 66번길 22, 23-1 백년대로 310, 314, 314-1, 316 신흥로 27
	5	1	신흥로 13, 106동 101~1505호(상동, 우성아파트)
		2	신흥로 13, 106동 106~1507호(상동, 우성아파트)
		3	신흥로 13, 107동 101~1502호(상동, 우성아파트)
		4	신흥로 13, 107동 103~1505호(상동, 우성아파트)
		5	신흥로 13, 110동 101~1502호(상동, 우성아파트)
		6	신흥로 13, 110동 103~1505호(상동, 우성아파트)
		7	교육로 49, 51, 51-1, 53, 55, 59, 63 임암로 42번길 15-1, 11, 15
	6	1	신흥로 13, 108동 101~1502호(상동, 우성아파트)
		2	신흥로 13, 108동 103~1505호(상동, 우성아파트)
		3	신흥로 13, 108동 106~1507호(상동, 우성아파트)
		4	신흥로 13, 109동 101~1502호(상동, 우성아파트)
		5	신흥로 13, 109동 103~1505호(상동, 우성아파트)
		6	신흥로 13, 109동 106~1507호(상동, 우성아파트)
		7	백년대로 292, 294, 298, 304, 306 교육로 66번길 9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7	1	신흥로45번길 13, 101동 101~1403호(상동, 동아아파트)
		2	신흥로45번길 13, 101동 104~1406호(상동, 동아아파트)
		3	신흥로45번길 13, 102동 101~1504호(상동, 동아아파트)
		4	신흥로45번길 13, 102동 105~1508호(상동, 동아아파트)
	9	1	신흥로45번길 13, 105동 101~1503호(상동, 동아아파트)
		2	신흥로45번길 13, 105동 104~1506호(상동, 동아아파트) 신흥로 45번길 9(상동, 동아아파트 상가)
		3	신흥로45번길 13, 106동 101~1304호(상동, 동아아파트)
		4	신흥로45번길 13, 106동 105~1308호(상동, 동아아파트)
	14	1	부흥로 12, 108동 101~1502호(상동, 삼성아파트) 부흥로 14(상동, 삼성아파트 상가)
		2	부흥로 12, 108동 103~1504호(상동, 삼성아파트)
		3	부흥로 12, 108동 105~1506호(상동, 삼성아파트)
		4	부흥로 12, 109동 101~1502호(상동, 삼성아파트)
		5	부흥로 12, 110동 101~1502호(상동, 삼성아파트)
		6	부흥로 12, 110동 103~1504호(상동, 삼성아파트)
	15	1	부흥로 30, 101동 101~1502호(상동, 하당초원타운) 부흥로 32(상동, 하당초원타운 상가)
		2	부흥로 30, 101동 103~1505호(상동, 하당초원타운)
		3	부흥로 30, 101동 106~1507호(상동, 하당초원타운)
		4	부흥로 30, 101동 108~1509호(상동, 하당초원타운)
	18	1	하당남부로 25, 111동 101~1502호(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하당남부로 27(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상가 B)
		2	하당남부로 25, 111동 103~1504호(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3	하당남부로 25, 112동 101~1302호(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4	하당남부로 25, 112동 103~1304호(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하당남부로 25, 112동 105~906호(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21	1	하당로 14, 101동 101~1502호(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2	하당로 14, 101동 103~1504호(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3	하당로 14, 102동 101~1502호(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4	하당로 14, 102동 103~1504호(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하당로 12(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상가A)
		5	하당로 14, 108동 101~1502호(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6	하당로 14, 108동 103~1504호(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25	1	통일대로 37번길 33, 101동 101~1504호(상동, 현대아파트)
		2	통일대로 37번길 33, 101동 105~1508호(상동, 현대아파트) 통일대로 37번길 33-1(상동, 현대아파트 상가)
		3	통일대로37번길 33, 102동 101~1504호(상동, 현대아파트)
		4	통일대로37번길 33, 102동 105~1506호(상동, 현대아파트)
	28	1	백년대로 270, 272, 274 백년대로 266번길 11, 11-1, 13, 7, 9-1, 9 백년대로 274번길 9-1, 9, 13-2, 13, 11-1, 13-1, 10, 10-1, 12, 14-1, 7, 14 백년대로 280번길 6, 8, 10, 10-1, 10-2, 12-1, 14, 24 입암로 34, 34-1, 36, 33
		2	백년대로 282, 284, 288 백년대로 280번길 23, 21-1, 21, 17, 15, 19, 13, 11-1, 11, 9, 7 입암로 42번길 12, 12-1, 16, 18, 14, 14-1, 20, 22, 4, 8
		3	입암로 42번길 24, 26, 26-1, 28-1, 28-3, 28, 28-2 백년대로 266번길 31-3, 31, 31-2, 31-1, 25, 25-1, 25-2, 25-3 백년대로 280번길 37, 35-1, 33-1, 33, 31, 29-1, 29, 25, 35, 27, 28, 30, 36, 32, 36-1, 38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29	1	백년대로 360, 362, 354 옥암로 83, 77, 77-1, 75, 73, 71, 69, 65, 63-1, 63, 61, 59 신흥로 73, 67, 61 신흥로 59번길 17, 15, 11, 18, 14, 6, 9, 5, 3 신흥로 69번길 17, 13, 12, 18, 18-1, 2, 4, 6, 5, 5-1 비파로 80, 70, 72, 76, 60, 62, 64 번영로 71
		2	비파로 63, 59, 57, 73, 71, 69-1, 69, 67, 61, 77 신흥로 45번길 2, 4, 6, 8, 8-1, 4-1, 10, 12, 14, 16, 18, 20, 24, 23 신흥로 20, 22, 24, 22-1, 28, 28-1, 32, 30, 34, 36, 38, 38-1, 40, 42, 42-1, 44 백년대로 340, 342, 326, 328, 330, 332, 334, 336, 338, 318, 320, 324, 322 교육로 66번길 43, 41, 39, 33, 31, 29, 25, 23 비파로 51번길 30, 33, 33-1, 31, 31-1, 27, 29, 10, 20, 8, 16, 17, 15, 13, 11, 9-2, 7, 9-1, 9, 19, 24, 18, 21 비파로 43번길 32, 28, 30, 31-1, 27, 31, 25, 25-1, 23, 19-1, 26, 22 장미로 28, 30, 28-1, 23, 25, 29, 31, 20 부흥로 23, 25, 31, 27, 29, 21
		3	장미로 36, 40, 36-1, 38, 50, 48, 51, 47 비파로 41, 41-1 비파로 43번길 18, 16-1, 14, 12, 10, 8-1, 8, 16, 19, 13-1, 13, 17, 9, 11, 7, 5, 4-1, 4 비파로 51번길 5, 3 부흥로 35, 35-1, 37-1, 39-1, 45, 33, 37, 39, 41, 43, 47, 49 신흥로 50
		4	신흥로 58, 62, 62-1, 72, 74 장미로 61, 68, 70, 73, 71, 67, 72, 56, 58, 74 비파로 50, 52, 42, 42-1, 44, 34, 36, 32, 26, 26-1, 28, 30, 29, 54, 46, 29-1, 27, 25-1, 25, 23, 37, 35-1, 35, 31 번영로 51, 53, 44, 45, 30, 28, 26, 38, 24, 29, 31 옥암로 51, 45, 43, 41, 47, 39, 37, 35, 33, 29, 27, 25 부흥로 71, 69, 67, 61, 59, 57, 48, 58, 62, 74 통일대로 37번길 34, 34-1, 38, 26 하당남부로 51번길 31, 27, 29, 24, 22, 20, 18, 20-1, 30, 21, 19-1, 19 하당남부로 61번길 31, 29, 26, 34, 20, 22, 24, 18, 25, 23 통일대로 37번길 24, 30, 30-1 교육로 10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30	1	통일대로 9, 15, 11-1, 11, 23, 21, 35, 33, 25, 27, 29, 29-1, 31 통일대로 37번길 1, 10, 10-1, 12, 14, 6, 20, 22, 16 하당남부로 10, 14, 12, 10-1, 18, 22, 24, 26, 26-1, 28, 30, 32, 34, 36-1, 37 비파로 1, 11-1, 11, 9, 7, 21, 19, 17, 15, 15-1
		2	하당남부로 65, 63, 59, 45, 47, 53, 48, 54, 48-1, 52, 52-1 하당남부로 51번길 15, 16, 14, 3 하당남부로 61번길 13-1, 13, 12, 16, 8, 6, 4, 3 비파로 16, 18, 20, 12, 14, 10, 14-1, 4 번영로 21, 22, 16, 9 옥암로 23, 19, 15, 21, 11 통일대로 49, 49-1, 51, 53, 63
		3	통일대로 12, 16 평화로 2, 10, 12 평화로 14번길 4, 12, 6 미향로 6, 8, 12, 14, 15, 3, 19
		4	미향로 21 평화로 14번길 13, 11, 9, 7-1, 5, 3 평화로 14 평화로20번길 2, 4, 6, 6-1, 8, 12, 12-1, 14, 16
	31	1	평화로20번길 11, 501동 101~1505호(상동, 우미파크빌), 평화로20번길 11-1(상동, 우미파크빌 상가)
		2	평화로20번길 11, 501동 106~1509호(상동, 우미파크빌)
		3	평화로20번길 11, 503동 101~1505호(상동, 우미파크빌)
		4	평화로20번길 11, 503동 106~1507호(상동, 우미파크빌)
	32	1	평화로 3, 5 평화로 73번길 33 통일대로 32, 34, 38, 40, 42, 42-1, 42-2, 48, 48-1, 50, 54, 30, 52 원형로 2, 4, 4-1, 6, 6-1 원형서로 14, 14-1, 15, 16, 18, 22, 26 평화로 11, 17
		2	원형로 7, 9, 11, 13, 16, 16-1, 18, 8, 20, 22 원형서로 1, 50, 52, 46-1, 48 평화로 65-6, 65-9, 69 평화로61번길 2, 4, 14, 15, 18, 19, 6, 8, 10, 12, 12-1, 14-1, 14-2 평화로73번길 3, 5, 15, 21, 23, 23-1, 25, 25-1, 19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32	3	평화로 41, 45, 51, 53, 53-1, 53-2, 53-3, 55, 23, 25, 25-1, 27, 29, 31, 33, 33-1, 55-1, 55-2 평화로 43번길 1, 3, 4, 4-1, 5, 6, 7, 8, 9, 11, 11-1, 3-1, 8-1 평화로 49번길 1, 3, 4, 5, 7, 8, 10, 12 원형서로 38, 42, 46
		4	평화로 38, 38-1, 38-3, 38-5, 38-6, 38-7, 40, 42, 44, 48, 48-1, 52, 54, 58, 64, 82 미향로 77, 79, 79-1, 81, 87-1, 89, 91, 93, 97, 99, 101, 115, 71, 73, 75, 83, 85, 87
	34	1	통일대로 60, 66, 74, 76, 78, 82, 88 원형로 27, 27-1, 31, 33, 35, 37, 37-1, 43, 44, 44-1, 44-2, 45, 46, 48, 42 원형동로 13, 17, 17-2, 19, 21, 21-1, 21-2, 25, 29, 31, 33, 35, 39-1, 39-2, 44, 46, 47-1, 48, 50, 50-1, 50-2, 53 평화로 73번길 22, 24, 24-1, 26 평화로 107번길 27, 25
		2	평화로 77, 79 평화로 73번길 4 평화로 83번길 3, 3-1, 3-2, 3-3, 5, 5-2, 9 원형로 26, 30, 34 원형동로 10, 12, 14, 16 상 동 1138
		3	평화로 87, 89, 91, 91-2, 91-3, 91-4, 97, 99, 103, 105 평화로 83번길 4 평화로 95번길 1, 1-1, 4, 5, 5-1, 7, 8, 8-1, 10, 11, 12 평화로 101번길 3, 3-1, 6, 8, 9, 9-1, 11, 12, 14, 7 평화로 107번길 3, 5, 7, 9, 9-1, 13
		4	평화로 86, 88, 90, 92, 92-1, 94, 96, 98, 100, 102, 104, 106, 84, 62 미향로 129, 131, 133, 135, 137, 137-1, 139, 141, 143, 145, 147, 151 상 동 1161, 1150, 1155
	36	1	입암로 4번길 13, 13-1, 15, 31, 27, 21 입암로 20번길 14, 16, 16-1, 14-1, 19-1, 19, 15, 13, 25, 24, 18, 20, 22, 22-1, 18-3, 18-1, 18-2 백년대로 256번길 20-1, 20, 22, 22-2, 22-1, 19, 19-1, 21-1, 21 백년대로 266번길 20, 22, 26, 24-1, 24-2
		2	입암로 4번길 14, 16, 18, 20, 22, 26, 30, 30-1, 26-1, 28, 36-1, 36, 16-1 하당로 82, 84, 86, 88, 82-1, 68, 76, 78, 76-1, 74-1, 72, 74, 3, 36, 9 하당로 68번길 3, 7, 9
		3	입암로 42번길 30-1, 30, 30-2, 31, 29, 27, 25-1, 23, 25 하당로 68번길 21, 19, 17, 15-1, 13, 19-1, 15, 23 교육로 41번길 19, 17, 15-1, 15, 13
		4	교육로 29, 27, 28, 30, 37, 38, 35, 40 교육로 41번길 8, 6, 24, 22 장미로 5, 3, 1, 4 부흥로 1, 3, 7, 17 비파로 43번길 37, 42-1, 40-1, 40, 36, 42, 46 비파로 51번길 41-1, 37, 35, 41, 39, 44, 46 신흥로 2, 2-1, 4, 10, 10-1, 12, 12-1, 14, 14-1, 16, 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용당1동	23	1	산정로186번길 6, 8, 8-1, 10, 10-1, 10-2, 10-3, 10-4, 12, 12-1, 12-2, 14, 14-1, 14-2, 16, 16-1 영산로245번길 26, 26-1 영산로257번길 25-1, 25-2	23	1	산정로186번길 6, 8, 8-1, 10, 10-1, 10-2, 10-3, 10-4, 12, 12-1, 12-2, 14, 14-1, 14-2, 16, 16-1 영산로245번길 26, 26-1 영산로257번길 25-1, 25-2
		2	동부로21번길 14, 16, 16-1, 16-2, 16-3, 16-4, 18, 18-1, 20, 20-1, 20-2, 20-3, 22, 22-1, 22-2, 24 영산로245번길 24, 24-1 영산로257번길 23, 25			동부로21번길 14, 16, 16-1, 16-2, 16-3, 16-4, 18, 18-1, 20, 20-1, 20-2, 20-3, 22, 22-1, 22-2, 24 영산로245번길 24, 24-1 영산로257번길 23, 25
		3	영산로245번길 18, 20, 20-1, 22 동부로17번길 14, 14-1, 16, 18, 20-1, 20-2(동부연립) 동부로21번길 13,15, 15-1, 15-2, 17, 17-1, 17-2, 17-3, 17-4			영산로245번길 18, 20, 20-1, 22, 동부로17번길 20-2(동부연립)
		4	영산로257번길 19, 19-1, 21			동부로17번길 14, 14-1, 16, 18, 20-1 동부로21번길 13,15, 15-1, 15-2, 17, 17-1, 17-2, 17-3, 17-4 영산로257번길 19, 19-1, 21
		5	신설			5 산정로 178, 178-1, 180, 180-1, 180-2, 180-3, 182, 182-1, 184, 184-1 산정로186번길 2, 2-1, 4 영산로245번길 23, 23-1, 23-2, 25, 25-1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용당1동	33	1	영산로183번길 2,2-1, 2-2 ,2-3, 2-4,3,4,5,5-2,7,9,9-1, 호정로 38-3, 영산로 179, 179-1, 181, 183, 185, 185-1, 산정동 50-11, 12, 13, 79~97, 44, 58, 145, 157, 203, 209, 210, 211, 212, 116	33	1	영산로183번길 2,2-1, 2-2 ,2-3, 2-4,3,4,5,5-2,7,9,9-1, 호정로 38-3, 영산로 179, 179-1, 181, 183, 185, 185-1, 산정동 50-11, 12, 13, 79~97, 44, 58, 145, 157, 203, 209, 210, 211, 212, 116
		2	영산로 185-2, 187 호정로 38, 38-1, 38-5, 38-6, 38-7, 38-8, 38-9 , 38-10, 38-11, 38-12, 40, 42, 42-1, 42-2 백년대로2번길 8, 8-2 산정동 50-9, 14~24, 27, 28, 29, 30, 116, 129, 130, 131, 134, 135, 140, 181, 183, 187, 188, 191, 192, 220, 221, 51-1 , 3			영산로 185-2, 187 호정로 38, 38-1, 38-5, 38-6, 38-7, 38-8, 38-9 , 38-10, 38-11, 38-12, 40, 42, 42-1, 42-2 산정동 50-9, 14~24, 27, 28, 29, 30, 116, 129, 130, 131, 134, 135, 140, 181, 183, 187, 188, 191, 192, 220, 221, 51-1 , 3
		3	연산로 5, 5-1, 5-2, 7, 산대로 43, 45 산대로45번길 1, 3 산정동 50-66~78, 122, 54-1, 5, 6, 8, 9, 10, 11, 12			연산로 5, 5-1, 5-2, 7, 산대로 43, 45 산대로45번길 1, 3 산정동 50-66~78, 122, 54-1, 5, 6, 8, 9, 10, 11, 12
		4	연산로 1-1, 3, 3-1, 3-2 산대로45번길 3-1 산정동 52-3, 4, 54-4, 14, 55-21			연산로 1-1, 3, 3-1, 3-2 산대로45번길 3-1 산정동 52-3, 4, 54-4, 14, 55-21
		5	호정로 41, 41-5, 41-4, 36, 36-1 산대로 45-1, 47, 49, 51 산대로45번길 2, 3-3, 4-2, 4-4, 7 호정로37번길 6, 산정동 55-5, 10, 12, 13, 14, 19, 20, 21, 24, 30, 31, 32, 35, 36~38, 39, 40, 41, 42, 43, 45, 46, 47, 74			호정로 41, 41-5, 41-4, 36, 36-1 산대로 45-1, 47, 49, 51 산대로45번길 2, 3-3, 4-2, 4-4, 7 호정로37번길 6, 산정동 55-5, 10, 12, 13, 14, 19, 20, 21, 24, 30, 31, 32, 35, 36~38, 39, 40, 41, 42, 43, 45, 46, 47, 74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용당1동	34	1	노송길 32-6 노송길38번길 10, 10-1, 12, 16 산대로45번길 10, 11, 11-1, 11-2, 12, 12-1 호정로37번길 5, 5-1, 7 호정로 33, 33-2, 33-3, 33-4, 36, 36-1, 37 산정동 50-43~45, 50, 74-81, 85, 86, 74-103, 114, 121, 125, 126, 128, 129, 132	34	1	노송길 32-6 노송길38번길 10, 10-1, 12, 16 산대로45번길 10, 11, 11-1, 11-2, 12, 12-1 호정로37번길 5, 5-1, 7 호정로 33, 33-2, 33-3, 33-4, 36, 36-1, 37 산정동 50-43~45, 50, 74-81, 85, 86, 74-103, 114, 121, 125, 126, 128, 129, 132
		2	노송길38번길 8, 8-1, 8-2, 8-3, 8-4, 8-5, 8-6, 8-7, 8-8, 8-9, 8-10 호정로31번길 8, 8-1, 10, 10-1, 11, 12, 12-1, 14, 14-1 노송길 32-6, 34 산정동 74-94, 153, 161, 183			노송길38번길 7-1, 8, 8-1, 8-2, 8-3, 8-4, 8-5, 8-6, 8-7, 8-8, 8-9, 8-10, 11-1, 11-7 호정로31번길 8, 8-1, 10, 10-1, 11, 12, 12-1, 14, 14-1 노송길 32-6, 34 산정동 74-94, 153, 161, 183
		3	노송길38번길 11,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1-10, 11-11, 13 산대로 53, 53-1, 55-1, 55-2, 55-3 호정로37번길 13, 15 산정동 60-2, 4, 62-4, 6, 7			노송길38번길 11, 11-2, 11-3, 11-4, 11-5, 11-6, 11-8, 11-9, 11-10, 11-11, 13 산대로 53, 53-1, 55-1, 55-2, 55-3 호정로37번길 13, 15 산정동 60-2, 4, 62-4, 6, 7
		4	신설			노송길38번길 2, 3, 4, 5, 5-2, 5-3, 5-4 산대로 55-4, 55-5, 57, 57-1, 57-2, 57-3, 57-4, 59, 61, 61-2
		5	신설			노송길 38, 38-1, 38-2, 40, 42, 42-1, 42-2, 42-3, 46 산대로 46, 63, 65, 65-1, 65-2 67 연산로17번길 3-1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용당1동	39	1	산정언덕로5번길 13 연산로 52-1,52-2,52-3 산정언덕로5번길 9,11,11-1,11-2,11-3, 연산로 48-1,48-2,52-1,52-2,52-3,54,54-1	39	1	산정언덕로5번길 13 연산로 52-1,52-2,52-3 산정언덕로5번길 9,11,11-1,11-2,11-3, 연산로 48-1,48-2,52-1,52-2,52-3,54,54-1
		2	산정로 208-1, 연산로 38,38-1,38-2,38-3,38-4,38-5,38-6 ,38-7,38-8,40, 산정언덕로5번길 3,3-1 산정동 131-1, 133, 133-2,6, 136-1,3,143-17			산정로 208-1, 연산로 38,38-1,38-2,38-3,38-4,38-5,38-6 ,38-7,38-8,40, 산정언덕로5번길 3,3-1 산정동 131-1, 133, 133-2,6, 136-1,3,143-17
		3	연산로 54-7,58,58-1 산정로199번길 25 산정동 224-20, 226-61,117,118,122			연산로 54-7,58,58-1 산정로199번길 25 산정동 224-20, 226-61,117,118,122
		4	산정로199번길 25, 산정언덕로11번길 7,7-1,7-2,7-3, 산정언덕로5번길 12-1,12-2,12-3,14,14-1,14-2,14-3 ,16-1,16-2,16-3, 16-4,16-5,16-6,16-7,16-9 산정언덕로5번길 16-10, 산정동 23-95,96,139~141, 143-74,83,			산정로199번길 25, 산정언덕로11번길 7,7-1,7-2,7-3, 산정언덕로5번길 12-1,12-2,12-3,14,14-1,14-2,14-3 ,16-1,16-2,16-3, 16-4,16-5,16-6,16-7,16-9 산정언덕로5번길 16-10, 산정동 23-95,96,139~141, 143-74,83,
		5	동목포길41번길 8-3 산정언덕로11번길 6,6-1,6-2 , 산정언덕로5번길 4-1,4-2,4-3,4-4,4-5, 6-1,8,10,16-10, 산정언덕로 5-1,7,7-1,7-2,9,9-1,9-2,13,13-1, 13-2,13-3,13-4,13-5, 13-6,13-7,13-8,13-9,13-11,13-12, 13-13,13-14,13-15,13-16,13-17,15 -1,17,17-1,17-2,17-3,17-4, 산정로 171, 산정동 23-3,8,22,61,70~72,86,97,99,103, 148, 143-46,47,50,55, 59, 69,12-26,27, 225-2,60, 226-8,22~26,34,37,54~56,59,71,75,			산정언덕로11번길 6,6-1,6-2 , 산정언덕로5번길 4-1,4-2,4-3,4-4,4-5, 6-1,8,10,16-10, 산정언덕로 5-1,7,7-1,7-2,9,9-1,9-2,13,13-1, 13-2,13-3,13-4,13-5, 13-6,13-7,13-8,13-9,13-11,13-12, 13-13,13-14,13-15,13-16,13-17,15 -1,17,17-1,17-2,17-3,17-4, 산정로 171, 산정동 23-3,8,22,61,70~72,86,97,99,103, 148, 143-46,47,50,55, 59, 69,12-26,27, 225-2,60, 226-8,22~26,34,37,54~56,59,71 ,75,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용당1동	40	1	영산로207,207-1,209,209-1,211-1,213-3,215-1,217-2,219,219-1,221,221-1,223,223-1,223-2 동부로21번길 6-1,12 산대로 13-3,15,23,23-1,23-2,25,27,27-2,27-3 산정동 38-6,	40	1	영산로207,207-1,209,209-1,211-1,213-3,215-1,217-2,219,219-1,221,221-1,223,223-1,223-2 산대로 13-3,15,23,23-1,23-2,25,27,27-2,27-3 산정동 38-6,
		2	산대로 4-7,4-8,4-9,4-10,4-11,4-12,4-13 산대로 6,6-1,6-2,7,7-1,8,8-1,8-2,8-3,9,10,11,11-1, 영산로 223-3,225,225-1227,229,229-1,229-2,230, 산정동 1044-1			산대로 4-7,4-8,4-9,4-10,4-11,4-12,4-13 산대로 6,6-1,6-2,7,7-1,8,8-1,8-2,8-3,9,10,11,11-1, 영산로 223-3,225,225-1227,229,229-1,229-2,230, 산정동 1044-1
		3	산정언덕로32번길 5,5-1,5-2 산정언덕로36번길 3,3-1,4,6,10,10-1 산대로 16-5 산정동 18-37,39,43,45, 20-1,4			산정언덕로32번길 5,5-1,5-2 산정언덕로36번길 3,3-1,4,6,10,10-1 산대로 16-5 산정동 18-37,39,43,45, 20-1,4
		4	산대로 10-2,10-3,10-4,10-5,12,12-1,12-2,14,14-1,16-1,16-3 산정동 20-9,15,18,19,			산대로 10-2,10-3,10-4,10-5,12,12-1,12-2,14,14-1,16-1,16-3 산정동 20-9,15,18,19,
		5	산정언덕로14번길 14-1 산정언덕로32번길 6-4,8,10,12,12-1,12-2 산 정 동 13-15,16,37,65~68,84,90,91,17-1,3~9,11,12,			산정언덕로14번길 14-1 산정언덕로32번길 6-4,8,10,12,12-1,12-2 산 정 동 13-15,16,37,65~68,84,90,91,17-1,3~9,11,12,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용당1동	42	1	연산로30번길 3,5,5-1,7,9 연산로 34, 산정언덕로10번길 3-2,4,5,5-1,5-2,6,6-1,6-2,6-3,7, 8,8-1,8-2 산정언덕로 6,6-1,	42	1	연산로30번길 3,5,5-1,7,9 연산로 34, 산정언덕로10번길 3-2,4,5,5-1,5-2,6,6-1,6-2,6-3,7, 8,8-1,8-2 산정언덕로 6,6-1,
		2	연산로30번길 9-1,9-2,9-3,9-4,9-5, 11,11-1,11-2,13,13-1,13-2,13-3,1 3-4,14,14-1,15,16 연산로30,산정동22,23-110,		2	연산로30번길 9-1,9-2,9-3,9-4,9-5, 11,11-1,11-2,13,13-1,13-2,13-3,1 3-4,14,14-1,15,16 연산로30,산정동22,23-110,
		3	산정언덕로14번길 4,4-1,4-2, 연산로30번길 21, 동목포길41번길 8 산정언덕로10번길 1,2-1, 3-1, 산정언덕로 8,10,10-1,10-2,10-3,10-4,12,12-1 ,12-2,14,14-1, 산정동 143-63		3	산정언덕로14번길 4,4-1,4-2, 연산로30번길 21, 산정언덕로10번길 1,2-1, 3-1, 산정언덕로 8,10,10-1,10-2,10-3,10-4,12,12-1 ,12-2,14,14-1, 산정동 143-63
		4	산정언덕로 18-1,18-2,18-3,18-4,18-5,18-6,20 ,24,26-1 산정언덕로14번길 1,1-1,3,3-1,3-3,5,5-1,7,9-1,9-2, 9-3,9-4 산정동 12-4,13-,99 226-46		4	산정언덕로 18-1,18-2,18-3,18-4,18-5,18-6,20 ,24,26-1 산정언덕로14번길 1,1-1,3,3-1,3-3,5,5-1,7,9-1,9-2, 9-3,9-4 산정동 12-4,13-,99 226-46
		5	산정언덕로 20,24,28,30,30-1,30-2, 산정언덕로14번길9,10,10-1,10-2, 13,15,15-1 연산로30번길 16-1,16-2, 산정동 13-6,8,		5	산정언덕로 20,24,28,30,30-1,30-2, 산정언덕로14번길9,10,10-1,10-2, 13,15,15-1 연산로30번길 16-1,16-2, 산정동 13-6,8,

〈신·구조문 대비표〉

동 명	개정 전			개정 후		
	통명	반명	관할구역	통명	반명	관할구역
산정동	28	1	신설	28	1	양을로79번길 6, 101, 102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2	신설		2	양을로79번길 6, 103, 104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3	신설		3	양을로79번길 6, 105, 106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4	신설		4	양을로79번길 6, 107, 108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신·구조문 대비표〉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연산동	20	신설		20	1	연산백련로1번길 111 (골드클래스9차아파트, 901동, 상가동)
					2	연산백련로1번길 111 (골드클래스9차아파트, 902동)
					3	연산백련로1번길 111 (골드클래스9차아파트, 903동)
					4	연산백련로1번길 111 (골드클래스9차아파트, 904동)
					5	연산백련로1번길 111 (골드클래스9차아파트, 905동)

〈신·구조문 대비표〉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2	1	하당로 77, 66, 62 , 56, 56-1, 58-1, 60, 58, 58-2, 46, 48, 50, 52, 50-1, 52-1 하당로68번길 8, 10, 10-1 하당로60번길 3, 7, 4, 8, 6, 하당로44번길 3-5, 3-3, 3-1, 3, 3-4, 3-2	2	1	하당로 77, 66, 62 , 56, 56-1, 58-1, 60, 58, 58-2, 46, 48, 50, 52, 50-1, 52-1 하당로68번길 8, 10, 10-1 하당로60번길 3, 7, 4, 8, 6, 하당로44번길 3-5, 3-3, 3-1, 3, 3-4, 3-2
		2	하당로68번길 14, 16, 18, 20, 20-1, 12 하당로60번길 15, 13-1, 13, 11, 9, 11-1, 10, 10-1, 10-2, 18 하당로30번길 29, 27, 23, 25 하당로34번길 22, 20 하당로44번길 5-4, 5-3, 5-2, 5-1, 5 , 13			2 하당로68번길 14, 16, 18, 20, 20-1, 12, 24 하당로60번길 15, 13-1, 13, 11, 9, 11-1, 10, 10-1, 10-2, 18 하당로30번길 29, 27, 23, 25, 26, 28, 28-1, 30 하당로34번길 22, 20 하당로44번길 5-4, 5-3, 5-2, 5-1, 5 , 13 교육로 21-1 교육로 41번길 7, 9, 11
		3	하당로30번길 17 , 15-1, 13 , 19, 15, 5-1, 3, 11, 9, 7, 5, 1 하당로34번길 10, 14, 16, 12, 13, 11, 9-1, 9, 7, 5-2, 5-1, 3 , 2, 4, 4-1, 6, 8, 5-3, 5 하당로44번길 8, 14, 10, 6, 6-1, 4, 4-1, 4-2 하당로 36, 36-1, 38-1, 38, 40			3 하당로30번길 17, 15-1, 13 , 19, 15, 5-1, 3, 11, 9, 7, 5, 1 하당로34번길 10, 14, 16, 12, 13, 11, 9-1, 9, 7, 5-2, 5-1, 3 , 2, 4, 4-1, 6, 8, 5-3, 5 하당로44번길 8, 14, 10, 6, 6-1, 4, 4-1, 4-2 하당로 36, 36-1, 38-1, 38, 40
		4	교육로 5 , 17, 15, 11, 13-1, 13 , 23 , 21, 19 교육로41번길 5, 3 하당로30번길 8, 10, 10-1, 12, 14, 14-1, 16, 18-1, 18-2, 18 하당로44번길 18			4 교육로 5 , 17, 15, 11, 13-1, 13 , 23 , 21, 19 교육로41번길 5, 3 하당로30번길 8, 10, 10-1, 12, 14, 14-1, 16, 18-1, 18-2, 18 하당로44번길 18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3	1	신흥로 13, 101동 101~1302호 (상동, 우성아파트), 상가	3	1	신흥로 13, 101동 101~1302호(상동, 우성아파트) 신흥로 15, (상동, 우성아파트 상가)
		2	신흥로 13, 101동 103~1305호 (상동, 우성아파트)		2	신흥로 13, 101동 103~1305호 (상동, 우성아파트)
		3	신흥로 13, 102동 101~1502호 (상동, 우성아파트)		3	신흥로 13, 102동 101~1502호 (상동, 우성아파트)
		4	신흥로 13, 102동 103~1505호 (상동, 우성아파트)		4	신흥로 13, 102동 103~1505호 (상동, 우성아파트)
		5	신흥로 13, 102동 106~1507호 (상동, 우성아파트)		5	신흥로 13, 102동 106~1507호 (상동, 우성아파트)
					6	교육로 45, 45-1 교육로 41번길 21, 25, 21-1 입암로 42번길 17, 17-1, 19, 19-1, 21
	4	1	신흥로 13, 112동 101~1505호 (상동, 우성아파트)	4	1	신흥로 13, 112동 101~1505호 (상동, 우성아파트)
		2	신흥로 13, 113동 101~1205호 (상동, 우성아파트)		2	신흥로 13, 113동 101~1205호 (상동, 우성아파트)
		3	신흥로 13, 114동 101~1505호 (상동, 우성아파트)		3	신흥로 13, 114동 101~1505호 (상동, 우성아파트)
		4	신흥로 13, 114동 106~1507호 (상동, 우성아파트)		4	신흥로 13, 114동 106~1507호 (상동, 우성아파트)
					5	교육로 66번길 22, 23-1 백년대로 310, 314, 314-1, 316 신흥로 27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5	1	신흥로 13, 106동 101~1505호 (상동, 우성아파트)	5	1	신흥로 13, 106동 101~1505호 (상동, 우성아파트)
		2	신흥로 13, 106동 106~1507호 (상동, 우성아파트)		2	신흥로 13, 106동 106~1507호 (상동, 우성아파트)
		3	신흥로 13, 107동 101~1502호 (상동, 우성아파트)		3	신흥로 13, 107동 101~1502호 (상동, 우성아파트)
		4	신흥로 13, 107동 103~1505호 (상동, 우성아파트)		4	신흥로 13, 107동 103~1505호 (상동, 우성아파트)
					5	신흥로 13, 110동 101~1502호 (상동, 우성아파트)
					6	신흥로 13, 110동 103~1505호 (상동, 우성아파트)
					7	교육로 63, 59, 55, 51-1, 49, 51 입암로 42번길 15-1, 11, 15
	6	1	신흥로 13, 108동 101~1502호 (상동, 우성아파트)	6	1	신흥로 13, 108동 101~1502호 (상동, 우성아파트)
		2	신흥로 13, 108동 103~1505호 (상동, 우성아파트)		2	신흥로 13, 108동 103~1505호 (상동, 우성아파트)
		3	신흥로 13, 108동 106~1507호 (상동, 우성아파트)		3	신흥로 13, 108동 106~1507호 (상동, 우성아파트)
		4	신흥로 13, 109동 101~1502호 (상동, 우성아파트)		4	신흥로 13, 109동 101~1502호 (상동, 우성아파트)
		5	신흥로 13, 109동 103~1505호 (상동, 우성아파트)		5	신흥로 13, 109동 103~1505호 (상동, 우성아파트)
		6	신흥로 13, 109동 106~1507호 (상동, 우성아파트)		6	신흥로 13, 109동 106~1507호 (상동, 우성아파트)
					7	백년대로 292, 294, 298, 304, 306 교육로 66번길 9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7	1	신흥로45번길	13,	101동	7	1	신흥로45번길	13,	101동
			101~1403호					101~1403호		
			(상동, 동아아파트)					(상동, 동아아파트)		
		2	신흥로45번길	13,	101동		2	신흥로45번길	13,	101동
			104~1406호					104~1406호		
		(상동, 동아아파트)				(상동, 동아아파트)				
	3	신흥로45번길	13,	102동	3	신흥로45번길	13,	102동		
			101~1504호					101~1504호		
		(상동, 동아아파트)				(상동, 동아아파트)				
	4	신흥로45번길	13,	102동	4	신흥로45번길	13,	102동		
			102~1508호					105~1508호		
		(상동, 동아아파트)				(상동, 동아아파트)				
	9	1	신흥로45번길	13,	105동	9	1	신흥로45번길	13,	105동
				101~1503호					101~1503호	
		(상동, 동아아파트)					(상동, 동아아파트)			
2		신흥로45번길	13,	105동	2		신흥로45번길	13,	105동	
		104~1506호					104~1506호(상동, 동아아파트),			
	(상동, 동아아파트),상가				신흥로 45번길 9(상동, 동아아파트 상가)					
3	신흥로45번길	13,	106동	3	신흥로45번길	13,	106동			
		101~1304호(상동, 동아아파트)					101~1304호(상동, 동아아파트)			
4	신흥로45번길	13,	106동	4	신흥로45번길	13,	106동			
		105~1308호(상동, 동아아파트)					105~1308호(상동, 동아아파트)			
14	1	부흥로 12,	108동	101~1502호	14	1	부흥로 12,	108동	101~1502호(상동, 삼성아파트),	
		(상동, 삼성아파트),상가					부흥로 14(상동, 삼성아파트 상가)			
	2	부흥로 12,	108동	103~1504호(상동, 삼성아파트)		2	부흥로 12,	108동	103~1504호(상동, 삼성아파트)	
	3	부흥로 12,	108동	105~1506호(상동, 삼성아파트)		3	부흥로 12,	108동	105~1506호(상동, 삼성아파트)	
	4	부흥로 12,	109동	101~1502호(상동, 삼성아파트)		4	부흥로 12,	109동	101~1502호(상동, 삼성아파트)	
	5	부흥로 12,	110동	101~1502호(상동, 삼성아파트)		5	부흥로 12,	110동	101~1502호(상동, 삼성아파트)	
6	부흥로 12,	110동	103~1504호(상동, 삼성아파트)	6	부흥로 12,	110동	103~1504호(상동, 삼성아파트)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15	1	부흥로 30, 101동 101~1502호 (상동, 하당초원타운), 상가	15	1	부흥로 30, 101동 101~1502호(상동, 하당초원타운), 부흥로 32(상동, 하당초원타운 상가)
		2	부흥로 30, 101동 103~1505호 (상동, 하당초원타운)		2	부흥로 30, 101동 103~1505호 (상동, 하당초원타운)
		3	부흥로 30, 101동 106~1507호 (상동, 하당초원타운)		3	부흥로 30, 101동 106~1507호 (상동, 하당초원타운)
		4	부흥로 30, 101동 108~1509호 (상동, 하당초원타운)		4	부흥로 30, 101동 108~1509호 (상동, 하당초원타운)
	18	1	하당남부로 25, 111동 101~1502호 (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18	1	하당남부로 25, 111동 101~1502호 (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하당남부로 27(상동, 꿈동산신안 아파트 상가 B)
		2	하당남부로 25, 111동 103~1504호 (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2	하당남부로 25, 111동 103~1504호 (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3	하당남부로 25, 112동 101~1302호 (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3	하당남부로 25, 112동 101~1302호 (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4	하당남부로 25, 112동 103~1304, 105~906호 (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4	하당남부로 25, 112동 103~1304 호, (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하당남부로 25, 112동 105~906호 (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21	1	하당로 14, 101동 101~1502호 (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21	1	하당로 14, 101동 101~1502호 (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2	하당로 14, 101동 103~1504호 (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2	하당로 14, 101동 103~1504호 (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3	하당로 14, 102동 101~1502호 (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3	하당로 14, 102동 101~1502호 (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4	하당로 14, 102동 103~1504호 (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상가		4	하당로 14, 102동 103~1504호(상 동, 꿈동산신안아파트), 하당로 12,(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상가 A)
		5	하당로 14, 108동 101~1502호 (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5	하당로 14, 108동 101~1502호 (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6	하당로 14, 108동 103~1504호 (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6	하당로 14, 108동 103~1504호 (상동, 꿈동산신안아파트)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25	1	통일대로37번길 33, 101동 101~1504호(상동, 현대아파트)	25	1	통일대로37번길 33, 101동 101~1504호(상동, 현대아파트)
		2	통일대로37번길 33, 101동 105~1508호 (상동, 현대아파트), 상가		2	통일대로37번길 33, 101동 105~1508호(상동, 현대아파트), 통일대로37번길 33-1(상동, 현대 아파트 상가)
		3	통일대로37번길 33, 102동 101~1504호 (상동, 현대아파트)		3	통일대로37번길 33, 102동 101~1504호 (상동, 현대아파트)
		4	통일대로37번길 33, 102동 105~1506호(상동, 현대아파트)		4	통일대로37번길 33, 102동 105~1506호(상동, 현대아파트)
	28	1	백년대로 270, 272, 274 백년대로266번길 11, 11-1, 13, 7, 9-1, 9 백년대로274번길 9-1, 9, 13-2, 13, 11-1, 13-1, 10, 10-1, 12, 14-1, 7, 14 백년대로280번길 6, 8, 10, 10-1, 10-2, 12-1, 14, 24 입암로 34, 34-1, 36, 33	28	1	백년대로 270, 272, 274 백년대로266번길 11, 11-1, 13, 7, 9-1, 9 백년대로274번길 9-1, 9, 13-2, 13, 11-1, 13-1, 10, 10-1, 12, 14-1, 7, 14 백년대로280번길 6, 8, 10, 10-1, 10-2, 12-1, 14, 24 입암로 34, 34-1, 36, 33
		2	백년대로 282, 284, 288 백년대로280번길 23, 21-1, 21, 17, 15, 19, 13, 11-1, 11, 9, 7 교육로 63, 59, 55, 53, 51-1, 49, 51 입암로42번길 15-1, 11, 15, 12, 12-1, 16, 18, 14, 14-1, 20, 22, 4, 8		2	백년대로 282, 284, 288 백년대로280번길 23, 21-1, 21, 17, 15, 19, 13, 11-1, 11, 9, 7 입암로42번길 12, 12-1, 16, 18, 14, 14-1, 20, 22, 4, 8
		3	입암로42번길 21, 19-1, 19, 17, 17-1 교육로 45-1, 교육로 45 교육로41번길 25, 21, 21-1 (28통 3반 일부- 954번지)		3	입 암 로 4 2 번 길 24, 26, 26-1, 28-1, 28-3, 28, 28-2 백년대로266번길 31-3, 31, 31-2, 31-1, 25, 25-1, 25-2, 25-3 백 년 대 로 2 8 0 번 길 37, 35-1, 33-1, 33, 31, 29-1, 29, 25, 35, 27, 28, 30, 36, 32, 36-1, 38
		4	입 암 로 4 2 번 길 24, 26, 26-1, 28-1, 28-3, 28, 28-2 백년대로266번길 31-3, 31, 31-2, 31-1, 25, 25-1, 25-2, 25-3 백 년 대 로 2 8 0 번 길 37, 35-1, 33-1, 33, 31, 29-1, 29, 25, 35, 27, 28, 30, 36, 32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29	1	백년대로 360, 362, 354 옥암로 83, 77, 77-1, 75, 73, 71, 69, 65, 63-1, 63, 61, 59 신흥로 73, 67, 61 신흥로59번길 17, 15, 11, 18, 14, 6, 9, 5, 3 신흥로69번길 17, 13, 12, 18, 18-1, 2, 4, 6, 5, 5-1 비파로 80, 70, 72, 76, 60, 62, 64 번영로 71	29	1	백년대로 360, 362, 354 옥암로 83, 77, 77-1, 75, 73, 71, 69, 65, 63-1, 63, 61, 59 신흥로 73, 67, 61 신흥로59번길 17, 15, 11, 18, 14, 6, 9, 5, 3 신흥로69번길 17, 13, 12, 18, 18-1, 2, 4, 6, 5, 5-1 비파로 80, 70, 72, 76, 60, 62, 64 번영로 71
		2	비파로 63, 59, 57, 73, 71, 69-1, 69, 67, 61, 77 신흥로45번길 2, 4, 6, 8, 8-1, 4-1, 10, 12, 14, 16, 18, 20, 24, 23 신흥로 20, 22, 24, 22-1, 28, 28-1, 32, 30, 34, 36, 38, 38-1, 40, 42, 42-1, 44 백년대로 340, 342, 326, 328, 330, 332, 334, 336, 338, 318, 320, 324, 310, 314-1, 316, 322, 314, 298, 306, 304, 294, 292 교육로66번길 43, 41, 39, 33, 31, 29, 25, 22, 23-1, 23, 9 비파로51번길 30, 33, 33-1, 31, 31-1, 27, 29, 10, 20, 8, 16, 17, 15, 13, 11, 9-2, 7, 9-1, 9, 19, 24, 18 비파로43번길 32, 28, 30, 31-1, 27, 31, 25, 25-1, 23, 19-1, 26, 22 장미로 28, 30, 28-1, 23, 25, 29, 31, 20 부흥로 23, 25, 31, 27, 29, 21		2	비 파 로 63, 59, 57, 73, 71, 69-1, 69, 67, 61, 77 신흥로45번길 2, 4, 6, 8, 8-1, 4-1, 10, 12, 14, 16, 18, 20, 24, 23 신흥로 20, 22, 24, 22-1, 28, 28-1, 32, 30, 34, 36, 38, 38-1, 40, 42, 42-1, 44 백년대로 340, 342, 326, 328, 330, 332, 334, 336, 338, 318, 320, 324, 322 교육로66번길 43, 41, 39, 33, 31, 29, 25, 23 비파로51번길 30, 33, 33-1, 31, 31-1, 27, 29, 10, 20, 8, 16, 17, 15, 13, 11, 9-2, 7, 9-1, 9, 19, 24, 18, 21 비파로43번길 32, 28, 30, 31-1, 27, 31, 25, 25-1, 23, 19-1, 26, 22 장미로 28, 30, 28-1, 23, 25, 29, 31, 20 부흥로 23, 25, 31, 27, 29, 21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29	3	장미로 36, 40, 36-1, 38, 50, 48, 51, 47 비파로 41, 41-1 비파로43번길 18, 16-1, 14, 12, 10, 8-1, 8, 16, 19, 13-1, 13, 17, 9, 11, 7, 5, 4-1, 4 비파로51번길 5, 3 부흥로 35, 35-1, 37-1, 39-1, 45, 33, 37, 39, 41, 43, 47, 49 신흥로 50		3	장미로 36, 40, 36-1, 38, 50, 48, 51, 47 비파로 41, 41-1 비파로43번길 18, 16-1, 14, 12, 10, 8-1, 8, 16, 19, 13-1, 13, 17, 9, 11, 7, 5, 4-1, 4 비파로51번길 5, 3 부흥로 35, 35-1, 37-1, 39-1, 45, 33, 37, 39, 41, 43, 47, 49 신흥로 50
		4	신흥로 58, 62, 62-1, 72, 74 장미로 61, 73, 71, 67, 70, 72, 68, 56, 58 비파로 50, 52, 42, 42-1, 44, 34, 36, 32, 26, 26-1, 28, 30, 29, 54, 46, 29-1, 27, 25-1, 25, 23, 37, 35-1, 35, 31 번영로 51, 53, 44, 45, 30, 28, 26, 38, 24, 29, 31 옥암로 51, 45, 43, 41, 47, 39, 37, 35, 33, 29, 27, 25 부흥로 71, 69, 67, 61, 59, 57, 48, 58, 62, 74 통일대로37번길 34, 34-1, 38 하당남부로51번길 31, 27, 29, 24, 22, 20, 18, 20-1, 30, 21, 19-1, 19 하당남부로61번길 31, 29, 26, 34, 20, 22, 24, 18, 25 통일대로37번길 24, 30, 30-1 교육로 10		4	신흥로 58, 62, 62-1, 72, 74 장미로 61, 73, 71, 67, 72, 56, 58, 74 비파로 50, 52, 42, 42-1, 44, 34, 36, 32, 26, 26-1, 28, 30, 29, 54, 46, 29-1, 27, 25-1, 25, 23, 37, 35-1, 35, 31 번영로 51, 53, 44, 45, 30, 28, 26, 38, 24, 29, 31 옥암로 51, 45, 43, 41, 47, 39, 37, 35, 33, 29, 27, 25 부흥로 71, 69, 67, 61, 59, 57, 48, 58, 62, 74 통일대로37번길 34, 34-1, 38, 26 하당남부로51번길 31, 27, 29, 24, 22, 20, 18, 20-1, 30, 21, 19-1, 19 하당남부로61번길 31, 29, 26, 34, 20, 22, 24, 18, 25, 23 통일대로37번길 24, 30, 30-1 교육로 10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30	1	통일대로 9, 15, 11-1, 11, 23, 21, 35, 33 통일대로37번길 1, 10, 10-1, 12, 14, 6, 20, 22 하당남부로 10, 14, 12, 10-1, 18, 22, 24, 26, 26-1, 28, 30, 32, 34, 36-1, 37 비파로 1, 11-1, 11, 9, 7, 21, 19, 17, 15, 15-1	30	1	통일대로 9, 15, 11-1, 11, 23, 21, 35, 33, 25, 27, 29, 29-1, 31 통일대로37번길 1, 10, 10-1, 12, 14, 6, 20, 22, 16 하당남부로 10, 14, 12, 10-1, 18, 22, 24, 26, 26-1, 28, 30, 32, 34, 36-1, 37 비파로 1, 11-1, 11, 9, 7, 21, 19, 17, 15, 15-1
		2	하 당 남 부 로 65, 63, 59, 45, 47, 53, 48, 54, 48-1, 52, 52-1 하당남부로51번길 15, 16, 14, 3 하당남부로61번길 13-1, 13, 12, 16, 8, 6, 4, 3 비파로 16, 18, 20, 12, 14, 10, 14-1, 4 번영로 21, 22, 16, 9 옥암로 23, 19, 15, 21, 11 통일대로 49, 49-1, 51, 53, 63		2	하당남부로 65, 63, 59, 45, 47, 53, 48, 54, 48-1, 52, 52-1 하당남부로51번길 15, 16, 14, 3 하당남부로61번길 13-1, 13, 12, 16, 8, 6, 4, 3 비파로 16, 18, 20, 12, 14, 10, 14-1, 4 번영로 21, 22, 16, 9 옥암로 23, 19, 15, 21, 11 통일대로 49, 49-1, 51, 53, 63
		3	통일대로 12, 16 평화로 2, 10, 12 평화로14번길 4, 12, 6 미향로 6, 8, 12, 14, 15, 3, 19		3	통일대로 12, 16 평화로 2, 10, 12 평화로14번길 4, 12, 6 미향로 6, 8, 12, 14, 15, 3, 19
		4	미향로 21 평화로14번길 13, 11, 9, 7-1, 5, 3 평화로 14 평화로20번길 2, 4		4	미향로 21 평화로14번길 13, 11, 9, 7-1, 5, 3 평화로 14 평화로20번길 2, 4, 6, 6-1, 8, 12, 12-1, 14, 16
	31	1	평화로20번길 11, 501동 101~1505호 (상동, 우미파크빌), 상가	31	1	평화로20번길 11, 501동 101~1505호(상동, 우미파크빌), 평화로20번길 11-1(상동, 우미파크빌 상가)
		2	평화로20번길 11, 501동 106~1509호(상동, 우미파크빌)		2	평화로20번길 11, 501동 106~1509호(상동, 우미파크빌)
		3	평화로20번길 11, 503동 101~1505호(상동, 우미파크빌)		3	평화로20번길 11, 503동 101~1505호(상동, 우미파크빌)
		4	평화로20번길 11, 503동 106~1507호(상동, 우미파크빌)		4	평화로20번길 11, 503동 106~1507호(상동, 우미파크빌)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32	1	평화로 3, 5 평화로73번길 33 통일대로 32,34,38,40,42,42-1,42-2,48,48-1,50,54 원형로 2,4,4-1,6,6-1 원형서로 14,14-1,15,16,18,22,26 상동 1135, 1136	32	1	평화로 3, 5 평화로73번길 33 통일대로 32,34,38,40,42,42-1,42-2,48,48-1,50,54, 30, 52 원형로 2,4,4-1,6,6-1 원형서로 14,14-1,15,16,18,22,26 평화로 11, 17
		2	원형로 7,9,11,13,16,16-1,18 원형서로 1,50,52,46-1 평화로 65-6,65-9,69 평화로61번길 2,4,14,15,18,19 평화로73번길 3,5,15,21,23,23-1,25,25-1 상 동 1133		2	원형로 7,9,11,13,16,16-1,18, 8, 20, 22 원형서로 1,50,52,46-1, 48 평화로 65-6,65-9,69 평화로61번길 2,4,14,15,18,19, 6, 8, 10, 12, 12-1, 14-1, 14-2 평화로73번길 3,5,15,21,23,23-1,25, 25-1, 19
		3	평화로 41,45,51,53,53-1,53-2,53-3,55 평화로43번길 1,3,4,4-1,5,6,7,8,9,11,11-1 평화로49번길 1,3,4,5,7,8,10,12 원형서로 38,42		3	평화로 41,45,51,53,53-1,53-2,53-3,55, 23, 25, 25-1, 27, 29, 31, 33, 33-1, 55-1, 55-2 평화로43번길 1,3,4,4-1,5,6,7,8,9,11,11-1, 3-1, 8-1 평화로49번길 1,3,4,5,7,8,10,12 원형서로 38, 42, 46
		4	평화로38,38-1,38-3,38-5,38-6,38-7,40,42,44,48,48-1, 52, 54, 58,64,82 미향로 77,79,79-1,81,87-1,89,91,93,97,99,101,115 상 동 1150,1155,1156		4	평화로 38,38-1,38-3,38-5,38-6,38-7,40,42,44,48,48-1,52, 54,58,64,82 미향로 77,79,79-1,81,87-1,89,91,93,97,99,101,115, 71, 73, 75, 83, 85, 87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34	1	통일대로 60,66,74,76,78,82,88 원 형 로 27,27-1,31,33,35,37,37-1,43,44,44-1 44-2,45,46,48 원 동 로 13,17,17-2,19,21,21-1,21-2, 25, 29, 31, 33, 35, 39-1, 39-2, 44, 46, 47-1,48,50,50-1,50-2,53 평화로73번길 22,24,24-1,26 평화로107번길 27 상 동 1127, 1128, 1130	34	1	통일대로 60,66,74,76,78,82,88 원 형 로 27,27-1,31,33,35,37,37-1,43,44,4 4-1,44-2,45,46,48, 42 원 동 로 13,17,17-2,19,21,21-1,21-2, 25, 29, 31, 33, 35, 39-1, 39-2, 44, 46, 47-1,48,50,50-1,50-2,53 평화로73번길 22,24,24-1,26 평화로107번길 27, 25	
		2	평화로 77,79 평화로73번길 4 평화로83번길 3,3-1,3-2,3-3,5,5-2,9 원형로 26,30,34 원형동로 10,12,14,16 상 동 1138			2	평화로 77,79 평화로73번길 4 평 화 로 8 3 번 길 3,3-1,3-2,3-3,5,5-2,9 원형로 26,30,34 원형동로 10,12,14,16 상 동 1138
		3	평 화 로 87,89,91,91-2,91-3,91-4,97,99,103,1 05 평화로83번길 4 평 화 로 9 5 번 길 1,1-1,4,5,5-1,7,8,8-1,10,11,12 평 화 로 1 0 1 번 길 3,3-1,6,8,9,9-1,11,12,14 평화로107번길 3,5,7,9,9-1,13			3	평 화 로 87,89,91,91-2,91-3,91-4,97,99,10 3,105 평화로83번길 4 평 화 로 9 5 번 길 1,1-1,4,5,5-1,7,8,8-1,10,11,12 평 화 로 1 0 1 번 길 3,3-1,6,8,9,9-1,11,12,14, 7 평화로107번길 3,5,7,9,9-1,13
		4	평 화 로 86,88,90,92,92-1,94,96,98,100,102,1 04,106 미 항 로 129,131,133,135,137,137-1,139, 141,143,145,147,151 상 동 1158, 1156, 1161, 1150, 1155			4	평 화 로 86,88,90,92,92-1,94,96,98,100,10 2,104,106, 84, 62 미 항 로 129,131,133,135,137,137-1,139, 141,143,145,147,151 상 동 1161, 1150, 1155

동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신흥동	36	1	입암로4번길 13, 13-1, 15, 31, 27, 21 입암로20번길 14, 16, 16-1, 14-1, 19-1, 19, 15, 13, 25, 24, 18, 20, 22, 22-1, 18-3, 18-1, 18-2 백년대로256번길 20-1, 20, 22, 22-2, 22-1, 19, 19-1, 21-1, 21 백년대로266번길 20, 22, 26, 24-1 (1통 3반)	36	1	입암로4번길 13, 13-1, 15, 31, 27, 21 입암로20번길 14, 16, 16-1, 14-1, 19-1, 19, 15, 13, 25, 24, 18, 20, 22, 22-1, 18-3, 18-1, 18-2 백년대로256번길 20-1, 20, 22, 22-2, 22-1, 19, 19-1, 21-1, 21 백년대로266번길 20, 22, 26, 24-1, 24-2
		2	입암로4번길 14, 16, 18, 20, 22, 26, 30, 30-1, 26-1, 28, 36-1 하당로 82, 84, 86, 88, 82-1, 68, 76, 78, 76-1, 74-1, 72, 74, 3, 36, 9 (1통 4반)			입암로4번길 14, 16, 18, 20, 22, 26, 30, 30-1, 26-1, 28, 36-1, 36, 16-1 하당로 82, 84, 86, 88, 82-1, 68, 76, 78, 76-1, 74-1, 72, 74, 3, 36, 9 하당로 68번길 3, 7, 9
		3	입암로42번길 30-1, 30, 30-2, 31, 29, 27, 25-1, 23, 25 하당로68번길 21, 19, 17, 15-1, 13, 19-1, 15, 23 교육로41번길 19, 17, 15-1, 15, 13 (28통 3반 - 951, 955번지)			입암로42번길 30-1, 30, 30-2, 31, 29, 27, 25-1, 23, 25 하당로68번길 21, 19, 17, 15-1, 13, 19-1, 15, 23 교육로41번길 19, 17, 15-1, 15, 13
		4	교육로 29, 27, 28, 30, 37, 38, 35, 40 교육로41번길 8, 6, 24, 22 장미로 5, 3, 1 부흥로 1, 3, 7, 17 비파로43번길 37, 42-1, 40-1, 40, 36, 42, 46 비파로51번길 41-1, 37, 35, 41, 39, 44, 46 신흥로 2, 2-1, 4, 10, 10-1, 12, 12-1, 14, 14-1, 16, 8 (2통 4반)			교육로 29, 27, 28, 30, 37, 38, 35, 40 교육로41번길 8, 6, 24, 22 장미로 5, 3, 1, 4 부흥로 1, 3, 7, 17 비파로43번길 37, 42-1, 40-1, 40, 36, 42, 46 비파로51번길 41-1, 37, 35, 41, 39, 44, 46 신흥로 2, 2-1, 4, 10, 10-1, 12, 12-1, 14, 14-1, 16, 8

목포시 공고 제 2020-1922 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4.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통장과 그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선발기준 등을 정비하여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개정 및 삭제 (안 제2조, 제6조)
-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객관적 평가기준 개정 (안 제4조)
-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마련 (안 제7조제1항)
- 장학금 지급정지 불명확한 기준 삭제 (안 제8조제1항제4호)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예산 수반사항 : 570천원 X 617명 X 15% = 52,753천원

8. 규제심사(심의) 대상여부 검토 : 해당없음

9.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2. 14(월) ~ 2021. 1 .4. (월)(21일간)

10.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고등학교**”를 “**중·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학금은 통장 자녀에게 재학기간 중 학력별 1회만 지급하며, 장학금 수혜 후 두 학기동안 기 수혜자녀 및 다른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제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장 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4조제1항 중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를 “**별표의 기준**”으로, “**개시후**”를 “**개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학생**”을 “**중·고등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 “**동간의 균형**”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력자, 장기재직 통장의 자녀, 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u>고등학교</u> 와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자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 중 · <u>고등학교</u> ----- ----- -----.
②장학생은 통장 1인에 대하여 1 자녀로 하며,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기 기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장학금은 통장 자녀에게 재학기간 중 학력별 1회만 지급하며, 장학금 수혜 후 두 학기동안 기 수혜 자녀 및 다른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③----- ----- ----- . 다만, 통장 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4조(선발) ①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u>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u>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u>개시 후 1월 이내에</u>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①----- ----- <u>별표의 기준</u> ----- ----- 개시 후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u>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u>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u>중 · 고등학생</u> ----- -----<삭 제>----- ----- .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신청인이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1. 임기가 오래된 통장의 자녀
2. 연령이 많은 통장의 자녀

제6조 (장학금액) ①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을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②목포지역 외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목포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 이내로 한다.

제8조 (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삭 제
2. · 3. (생 략)
4.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을 사용한 때
-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력자, 장기재직 통장의 자녀, 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

2.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별표]**통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1. 총점배분**

계	학업성적 또는 특기	통장 경력	통장 상훈
100	50	40	10

2. 항목별 심사기준**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업성적 우수분야	중·고등 학생	90점이상	85점이상 ~90점미만	80점이상 ~85점미만	70점이상 ~80점미만	60점이상 ~70점미만
	대학생	4.0이상	3.5이상 ~4.0미만	3.0이상 ~3.5미만	2.5이상 ~3.0미만	2.0이상 ~2.5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도대표급,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군의 대표급, 군수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	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		50	40	30	20	10

※ 학업성적: 직전학기 성적 / 특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년도를 제외한 최근 1년 이내 수상이력

나. 통장 경력

근속연수	7년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점 수	40	35	30	25	20	15	10

다. 통장 상훈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도지사	시장
점 수	10	9	8	7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훈격 한개만 인정함

목포시 공고 제 2020-1923 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4.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통장 자녀 장학금과 관련하여 최초 신청 서류를 통해 필요한 사항만 기재하고 지급청구서 중복 제출 절차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최초 신청 서류 간소화 및 삭제 (안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제2항, 제3항)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8. 규제심사(심의) 대상여부 검토 : 해당없음

9.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2. 14(월) ~ 2021. 1. 4(월)(21일간)

10.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발행)”를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별지제4호서식)와 통장 신분 확인서를 첨부하여”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 ----- ----- -----.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발행) 1통	1. ----- ----- 서류 ----- -----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삭 제>
3. 삭 제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4. (현행과 같음)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 신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3조 (추천) ----- ----- --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 -----.
제4조 (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선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삭 제>

[별지 제1호 서식]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통 장	성 명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통장경력	. . . ~ . . . (년 월)			
학 생	성 명	(남 · 여)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과	
	학 년			지원분야	학업성적우수/특기
	타장학금 수 혜	지 급 처		보호자(통장)	
		총수령액		과의 관계	
계좌번호(금융기관)			예 금 주		

년 학기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입상 관계 서류 1부
3. 등록금 납입증명서(대학생) 1부
4. 통장 상훈 관계 서류 1부(해당시)

[별지 제2호 서식]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통 장	성 명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학 생	성 명	(남 · 여)	학 교 명	
	학 년		지원분야	학업성적우수/특기
확 인	통장경력	년 월	담 당 자 확 인	직급 성명 (인)
	추천사유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년 학기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목포시장 귀하

서식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2 호 서식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table border="1"> <tr> <td rowspan="5">인적사항</td> <td>성명</td> <td>생년월일 (성별)</td> <td>직위</td> <td>등통장</td> </tr> <tr> <td colspan="4">주소</td> </tr> <tr> <td>전화</td> <td>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td> <td>휴대폰번호</td> <td></td> </tr> <tr> <td></td> <td></td> <td>자택번호</td> <td></td> </tr> <tr> <td>장학생</td> <td>성명</td> <td>생년월일 (성별)</td> <td>학교명 (학년(반)과)</td> <td>학년 학교과</td> </tr> <tr> <td></td> <td>통장과 관계</td> <td>성적개요</td> <td>특기개요</td> <td></td> </tr> <tr> <td colspan="2">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 (학비 보조금) 혜택 여부</td> <td colspan="3">종 류() 분기별 합산금액()</td> </tr> <tr> <td>건강보험료</td> <td>원</td> <td>지방세과세액 (재산세, 자동차세)</td> <td colspan="2">원</td> </tr> <tr> <td colspan="5">② 가 족 사 항</td> </tr> <tr> <td>성명</td> <td>생년월일</td> <td>주 소</td> <td>장학생과의 관계</td> <td>비 고</td> </tr> <tr> <td colspan="5">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td> </tr> <tr> <td>구비서류</td> <td colspan="4">학생의 재학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td> </tr> <tr> <td>유의사항</td> <td colspan="4"> ① 란은 보호자(부·모)나 장학생이 당해 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② 란은 주민등록상 가족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단, 부모는 타 지역 거주자도 기재 ※ 성적개요는 재적(입학) 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td> </tr> </table>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위	등통장	주소				전화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휴대폰번호				자택번호		장학생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년(반)과)	학년 학교과		통장과 관계	성적개요	특기개요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 (학비 보조금) 혜택 여부		종 류() 분기별 합산금액()			건강보험료	원	지방세과세액 (재산세, 자동차세)	원		② 가 족 사 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장학생과의 관계	비 고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학생의 재학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의사항	① 란은 보호자(부·모)나 장학생이 당해 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② 란은 주민등록상 가족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단, 부모는 타 지역 거주자도 기재 ※ 성적개요는 재적(입학) 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위	등통장																																																									
			주소																																																												
			전화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휴대폰번호																																																										
					자택번호																																																										
		장학생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년(반)과)	학년 학교과																																																									
		통장과 관계	성적개요	특기개요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 (학비 보조금) 혜택 여부		종 류() 분기별 합산금액()																																																												
	건강보험료	원	지방세과세액 (재산세, 자동차세)	원																																																											
	② 가 족 사 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장학생과의 관계	비 고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학생의 재학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의사항	① 란은 보호자(부·모)나 장학생이 당해 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② 란은 주민등록상 가족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단, 부모는 타 지역 거주자도 기재 ※ 성적개요는 재적(입학) 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 | | | | | |--|-------------|-------|------------------|-----------| | 통장 | 성명 | (남·여) | 생년월일 | | | | 주소 | | 연락처 | | | | 통장경력 (년 월) | | | | | 학생 | 성명 | (남·여) | 생년월일 | | | | 학교명 | | 학 과 | | | | 학 년 | | 지원분야 | 학업성적우수/특기 | | | 타장학금
수혜 | 지급처 | 보호자(통장)
과의 관계 | | | | | 총수령액 | | | | 계좌번호(금융기관) | | 예금주 | | | | <p align="center">년 학기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p> <p align="right">년 월 일</p> <p align="center">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날인)</p> <p align="center">목포시장 귀하</p> | | | | | | ※ 구비서류
1.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입학 관계 서류 1부
3. 등록금 납입증명서(대학생) 1부
4. 통장 상환 관계 서류 1부(해당시) | | | | | |

서식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4 호 서식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table border="1"> <tr> <td rowspan="4">인 적 사 항</td> <td>성 명</td> <td></td> <td>생년월일 (성별)</td> <td></td> <td>직 위</td> <td>통장</td> </tr> <tr> <td>주 소</td> <td colspan="5"></td> </tr> <tr> <td>재적기간</td> <td colspan="5">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td> </tr> <tr> <td>공적개요</td> <td colspan="5"></td> </tr> <tr> <td rowspan="2">장 학 생</td> <td>성 명</td> <td></td> <td>생년월일 (성별)</td> <td></td> <td>학교명 (학년과 학과)</td> <td>학년 반과 학과</td> </tr> <tr> <td>통장과의 관 계</td> <td></td> <td>동 형</td> <td></td> <td>특기개요</td> <td></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가 족 사 항</td> </tr> <tr> <td>성 명</td> <td>생년월일</td> <td colspan="3">주 소</td> <td>장 학 생 의의관계</td> <td>비 고</td> </tr> <tr> <td></td> <td></td> <td colspan="3"></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 colspan="3"></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 colspan="3"></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 colspan="3"></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관 련 공 무 인</td> <td>관련서류</td> <td>확인일자</td> <td>확인결과</td> <td>확인자</td> <td colspan="2">비고</td> </tr> <tr> <td>통반장 위 해촉대장</td> <td></td> <td></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타장학금(학비보조금) 혜택여부</td> <td></td> <td></td> <td></td> <td colspan="2"></td> </tr> <tr> <td>동 장 종합의견</td> <td colspan="6"> 위자를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20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통장 (직인) 목포시장 귀하 </td> </tr> </table>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 위	통장	주 소						재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공적개요						장 학 생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년과 학과)	학년 반과 학과	통장과의 관 계		동 형		특기개요		가 족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 학 생 의의관계	비 고																													관 련 공 무 인	관련서류	확인일자	확인결과	확인자	비고		통반장 위 해촉대장						타장학금(학비보조금) 혜택여부						동 장 종합의견	위자를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20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통장 (직인) 목포시장 귀하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 위	통장																																																																																																				
		주 소																																																																																																										
		재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공적개요																																																																																																										
	장 학 생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년과 학과)	학년 반과 학과																																																																																																					
		통장과의 관 계		동 형		특기개요																																																																																																						
	가 족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 학 생 의의관계	비 고																																																																																																					
	관 련 공 무 인	관련서류	확인일자	확인결과	확인자	비고																																																																																																						
		통반장 위 해촉대장																																																																																																										
타장학금(학비보조금) 혜택여부																																																																																																												
동 장 종합의견	위자를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20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통장 (직인) 목포시장 귀하																																																																																																											

 < 삭 제 > |

서식	현 행	개 정 안																												
별 지 제 5 호 서 식	<table border="1"> <tr> <th colspan="4">장학금 지급신청서</th> </tr> <tr> <td>주 소</td> <td colspan="3"></td> </tr> <tr> <td>학교명 및 학과명 학년</td> <td>학교</td> <td>학과</td> <td>학년 반</td> </tr> <tr> <td>성 명</td> <td colspan="3">(남 여)</td> </tr> <tr> <td>생 년 월 일</td> <td colspan="3"></td> </tr> <tr> <td>계 화 번 호</td> <td colspan="3">(은행)</td> </tr> <tr> <td colspan="4"> 본인은 20 년도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성 명 (인) 동 통장 성 명 (인) 확인자 통장 (직인) 목포시장 귀하 </td> </tr> </table>	장학금 지급신청서				주 소				학교명 및 학과명 학년	학교	학과	학년 반	성 명	(남 여)			생 년 월 일				계 화 번 호	(은행)			본인은 20 년도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성 명 (인) 동 통장 성 명 (인) 확인자 통장 (직인) 목포시장 귀하				< 삭 제 >
	장학금 지급신청서																													
	주 소																													
	학교명 및 학과명 학년	학교	학과	학년 반																										
	성 명	(남 여)																												
	생 년 월 일																													
	계 화 번 호	(은행)																												
	본인은 20 년도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성 명 (인) 동 통장 성 명 (인) 확인자 통장 (직인) 목포시장 귀하																													

목포시 공고 제2020 - 1929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4.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제도개선 추진사항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 개정 후속조치

- 1) 신규임용시험 가산점 일부 폐지(제13조의3 제1항제3항 삭제, 별표7의2 삭제)
 - 6급 이하 신규임용시험에 시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폐지
- 2) 전산 직렬 ‘데이터’ 직류 신설(별표 4, 별표 5의2, 별표 7)
- 3) 활용도 낮은 직류 통폐합(별표 4,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7의4, 별표 9)
 - 활용도가 낮은 직류[운수·경비·야금·잠업·농화학·수산제조·수산증식·수산물검사·약제 직류]는 통·폐합됨에 따라 해당 직류 삭제

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

- 1)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블라인드채용 운영 표준안 반영(제6조, 별지 제3호)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표 개인정보보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블라인드 채용」운영표준안 서식 반영

- 2) 연구·지도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별표 7의4)
 - 기능사 자격증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제13조의3 관련 별표 7의4의 연구·지도직 가산대상 자격증에서 제외
- 3)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서식 신설(별지 제13호 신설)
 -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방법 및 절차(서식)를 명확화
- 4) 연구·지도직공무원 전직 시 임용예정직급 지정 기준 마련(제24조의2 신설)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다른 일반직공무원과 연구·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에 있어 임용 예정직급 지정 기준 마련 등
- 5) 경력경쟁임용 및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 등(별표 5의2, 별표 7의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격증 명칭 변경(별표 4,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4)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및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추가 반영(별표 6)
 -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추가 반영(별표 7)
 - 연구·지도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별표 7의4)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른 자격증 정비(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4)
 - 방재안전직렬 경력경쟁임용 및 가산대상 자격 요건 개정(별표 5의2, 별표 7, 별표 7의4)
 - 방재안전연구직렬 경력경쟁임용 및 가산대상 자격 요건 신설 등(별표 2, 별표 6, 별표 7의4, 별표 11)

다. 기타 수정·보완 사항 반영

1. 각 호의 조문 나열 순서 및 개인정보 등 운영상 미비사항에 대한 수정 보완(제3조제2항 각호, 별지 제4호 서식)
2. 보호대상자 명칭 변경(제6조제3항, 별지 제1호)
3. 누락된 직류 추가(별표 6, 별표 7)
4. 공무원 임용령과 연계하여 불필요한 문구 삭제(제14조)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6. 관련 부서 의견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7.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8. 입법예고 : 2020. 12. 14. ~ 2021. 1. 4. 예정

9.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월 4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790), 직접방문 등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8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4호, 제9호 및 제1호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각각 “신규임용시험”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전단 중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 예정 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 예정 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5급이상) 평균 승진 소요 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 예정 직급별(7급이상) 평균 승진 소요 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공무원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별표 2,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3, 별표 7의4, 별표 9,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제4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2. (생략) 3. (생략) 4.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생략)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5. (현행 제3호와 같음) 6. 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8. (현행 제6호와 같음) 4. (현행 제7호와 같음) 9. (현행 제8호와 같음) 1. (현행 제9호와 같음)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u>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u>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u>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u>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u>신규임용시험</u> ----- ----- ----- ----- ----- ----- ----- ----- -----. ② <u>신규임용시험</u> ----- ----- -----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 (응시수수료) ①·② (생 략)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13조의3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
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
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
만을 가산한다.

② (생 략)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

-----.

제6조의2 (응시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지원대상자-----
-----.

제13조의3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조제목 개정 2017.7.24.]

① ~ ⑤ (생략)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 ~ ⑩ (생략)

제23조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

④ 제2항-----

-----.

제14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조제목 개정 2017.7.24.]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연구 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등-----

-----.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23조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신 설>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 예정 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 예정 직급 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5급 이상) 평균 승진 소요 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 예정 직급별(7급 이상) 평균 승진 소요 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공무원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 예정 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2]

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계급		연구관 · 연구사
직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 · 식생활 · 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계급		연구관 · 연구사
직렬	직류	
농업연구	작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원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축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식품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조경	
수의연구	수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계급		연구관 · 연구사
직렬	직류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 연구	안전관리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재난관리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데 이 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 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 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 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 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포니셔 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 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능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야 금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농 업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잠 업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술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수산물검사	산업기사 :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 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 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 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	조리	기능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감 정 평 가 사(3)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 관리자(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 관리자(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 관리자(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전문가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물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물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물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원소추진사(특수) 방사선기(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선기(일반)(3) 방사선기(3)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선기(일반) 방사선기(1)감독자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수의사 약사(5)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숙 기	숙기			한글숙기 1·2급(5)	한글숙기 1·2·3급(2)	한글숙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렬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화 학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농업연구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제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정,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화공, 조정,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기사(방재)
	재난관리			기사(방재)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 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바이오 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 화학 제품제조생물공학 ,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 화학 제품제조생물공학 ,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행 정 운 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숙 기	숙 기	한글숙기 1급	한글숙기 1·2급	한글숙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상,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설비전기분야)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기분야)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 금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학	기술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계급 직렬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녹 지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 제조)	산업기사(종자, 식품)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수 의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보 건	일반해양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보 건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방 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 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계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 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 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 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 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 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 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 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 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 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 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 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 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 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 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 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직류			
			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설계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2] <삭제>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3조의3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 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 안전관리자직업상 담사2급, 사회조사분석 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 조사분석사2급, 임상 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헌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자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공 업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포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아 금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화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잠업	기사 : 기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화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화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학	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화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 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산업기사 :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수 산 물 검 사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보 건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보건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2급, 보건교육 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방사선관리 기사: 의공 산업기사: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정보조기사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정,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화공, 조정,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정,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정,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환경	수질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장수시설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장수시설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장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대기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 : 산림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기물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채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 사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 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 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	---	--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기계	산업기사 : 유탄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카메라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전카 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업연구	금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학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물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지도	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기 사 :	종자, 농화학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토목 ,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기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정,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농촌지도	임 업	산업기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자원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생물공학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의 무기록사 ,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 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 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산림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 해양환경, 산업 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 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 사 : 방재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4조제5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야금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 의	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수산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수산제조	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학), 식품제조
	수산증식	증식학, 수산증식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수 산-물 검-사	식품가공(학), 냉동학, 수산가공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	
방송통신	통 신 사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종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	약 무 약제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약제~~·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11]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7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공 업	일 반 기 계
			농 업 기 계
			기 계 운 전
	전 기		일 반 전 기
	전 자		전 자
	금 속		금 속
	섬 유		야 금 섬 유
	화 공		섬 유
	화 학		화 공
	물 리		-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일 반 농 업
			농 화 학
	농 업 환 경	농 촌 지 도	농 업
			일 반 농 업
	작 물 보 호	농 촌 지 도	농 화 학
			일 반 농 업
	농 업 경 영	농 촌 지 도	식 물 검 역
			농 업
	산 업 곤 충	농 촌 지 도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원 예	농 촌 지 도	잠 업
			잠 업
		농 촌 지 도	일 반 농 업
			농 화 학
		농 촌 지 도	농 업
			원 예

연구직		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농업연구	생명유전	농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촌생활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촌사회
			농촌생활
	축산	농업	축산
		농촌지도	축산
		공업설	농업기계
		도시설	농업토목
	농공	농촌지도	농업기계
			농업토목
녹지연구	임업경영	임업	전직류
		농촌지도	임업
수의연구	수의	수의	수의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환경	수질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자원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양식	해양수산	수산중식
		어촌지도	어촌
	수산공학	해양수산	어로
		어촌지도	어촌
	수산가공	해양수산	수산제조
		어촌지도	수산물검사
	수산경제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보건연구	의학	의무	일반의무
			치무
	약학	약무	약무
			약 재
	공중보건	보건	보건
		식품위생	식품위생
환경연구	환경	환경	전직류
시설연구	토목	시설	일반토목
	건축		농업토목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방재안전	방재안전
	재난관리		

2. 지도직공무원

지	도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렬	직	류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업 연 구	작	물			
				작 물 보 호				
				농 업 환 경				
				농 업 경 영				
		원		예				
		농 업 경 영	농 업 연 구	농 업 경 영				
		임	업	녹	지	전 직 류		
				녹 지 연 구	임	업		
			조	경				
	잠	업	농	업	잠	업		
			농 업 연 구	산	업	곤	충	
	원	예	농 업 연 구	원	예			
			축	산	농	업	축	산
	농 업 연 구	축			산			
	가	축	위	생	수	의		
					수 의 연 구	수	의	
	농 촌 사 회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농 업 기 계	공	업	농 업 기 계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업 토 목	시	설	농 업 토 목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촌 생 활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어 촌 지 도	어	촌	해	양	수	산		
					수	산	재	조
					수	산	중	식
					어	로		
					수	산	물	검
	해 양 수 산 연 구	전	직	류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지 제3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우)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	응 시 표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印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군	㉠	㉠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 · 부문 · 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 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회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제23조 관련)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O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illegible]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